

한국무역통상학회 · 한국외대 EU연구소 ·
부경대 글로벌 물류경영연구소 공동학술대회

기후변화 및 COVID-19방역과 국제무역통상 정책

□ 일시 : 2021. 6. 24.(목) 13:00 – 16:30

□ 장소 : 웨비나 (zoom접속)



• 공동주최 : 한국무역통상학회 · 한국외대 EU연구소 ·
부경대 글로벌 물류경영연구소

❖ 초대말씀 ❖

존경하는 한국무역통상학회 회원님들께,

COVID-19 바이러스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계절은 벌써 여름이 되었습니다. 눈부신 하늘과 바다를 만날 수 있는 여름의 초입에서 회원 여러분을 한국무역통상학회 하계학술대회로 초대합니다.

변이바이러스까지 출현한 COVID-19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위험으로 정부 측의 방역지침과 개최 장소인 학교 측의 상황과 회원님들의 건강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온라인 화상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집단감염의 확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상황이오니 널리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국무역통상학회의 이번 하계학술대회에서는 대주제인 “기후변화 및 COVID-19방역과 국제무역통상 정책”하에 회원 여러분의 주옥같은 논문 9편이 2개의 섹션과 2개의 분과에서 각각 발표됩니다.

우리나라 무역 통상 분야 발전을 위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학술제가 되길 바라며 동 분야에 많은 도움과 시사점을 제공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본 학술대회의 발표와 사회 및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COVID-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특히 한국외대 EU연구소 김봉철 교수님, 부경대 글로벌물류경영연구소 조찬혁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또한 학술대회 준비에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신 학회원 여러분들과 학회 사무국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2021. 6. 24.

한국무역통상학회 회장

이재득 배상

「기후변화 및 COVID-19방역과 국제무역통상 정책」

한국무역통상학회 · 한국외대 EU연구소 ·
부경대 글로벌 물류경영연구소 공동학술대회

- ☐ 대주제 : 기후변화 및 COVID-19방역과 국제무역통상 정책
- ☐ 일 시 : 2021년 6월 24일(목) 13:00 - 16:30
- ☐ 장 소 : 웨비나 (zoom접속)
- ☐ 개회식 일정 (13:30-13:40)
 - 개회사 : 이 재 득 교수(한국무역통상학회 회장, 부산대)
 - 사 회 : 서 지 민 교수(한국무역통상학회 사무국장, 부산대)
- ☐ 학술대회 일정

【한국무역통상학회】 사회: 박재진 교수 (동서대)			
세션	발표	주제	토론자
제1세션 13:40~14:40	오현석 교수 (계명대)	팬데믹 시대, 국제중재의 변화와 발전	한중규 교수 (순천대)
	김창수 교수 (부산대)	부산 신행이 인근지역의 생활여건에 미친 영향	최남석 교수 (전북대)
14:40~14:50 (10분)	Break Time		
【제1분과 - 한국외대 EU 연구소】 사회: 김봉철 교수(한국외대)			
제2세션 14:50~16:20	정호윤 박사 (부경대)	입지계수 분석을 통한 한국기업의 효율적 브라질 시장 진출방안 모색	김호 교수 (계명대)
	최재원 박사 (한국외대)	문화재의 거래에 대한 법적 쟁점 - 준거법을 중심으로 -	서진석 박사 (한국외대)
	양우진 박사 (한국외대)	중앙아시아 방산산업의 현황 - 아제르바이잔과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	이재운 교수 (홍콩중문대)
【제2분과 - 부경대 글로벌물류경영 연구소】 사회: 조찬혁 교수(부경대)			
제2세션 14:50~16:20	이하연 (부경대)	컨테이너 화물 운전자의 운전 외 노동에 대한 문제	이춘수 교수 (부경대)
			김철수 교수 (부경대)
	신민정 (부경대)	한국 수출화물의 기술 수준 유형별 구성 변화와 운송수단 활용 특성	김진환 교수 (부경대)
			최태영 교수 (부경대)
	왕주에 (부경대)	코로나-19가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 한·중 항공회사를 중심으로	하명신 교수 (부경대)
			김철수 교수 (부경대)
	왕야리 (부경대)	중국 관광회사의 주가변동성에 관한 연구 : DCC-BEKK 모형	이춘수 교수 (부경대)
			조찬혁 교수 (부경대)
폐회 16:20~16:30	폐회사		

❖ 차 례 ❖

1 세션

【한국무역통상학회】 / 사회: 박재진 교수 (동서대)

- 팬데믹 시대, 국제중재의 변화와 발전 5
발표: 오현석 교수(계명대)

- 부산 신행이 인근지역의 생활여건에 미친 영향 15
발표: 김창수 교수(부산대)

2 세션

【제1분과 - 한국외대 EU 연구소】 / 사회: 김봉철 교수(한국외대)

- 1. 입지계수 분석을 통한 한국기업의 효율적 브라질 시장 진출방안 모색 27
발표: 정호윤 박사(부경대)

- 2. 문화재의 거래에 대한 법적 쟁점 - 준거법을 중심으로 - 47
발표: 최재원 박사(한국외대)

- 3. 중앙아시아 방산산업의 현황 - 아제르바이잔과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 63
발표: 양우진 박사(한국외대)

【제2분과 - 부경대 글로벌물류경영 연구소】 사회: 조찬혁 교수(부경대)

- 1. 컨테이너 화물 운전자의 운전 외 노동에 대한 문제 83
발표: 이하연(부경대)

- 2. 한국 수출화물의 기술 수준 유형별 구성 변화와 운송수단 활용 특성 95
발표: 신민정(부경대)

- 3. 코로나-19가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 한·중 항공회사를 중심으로 107
발표: 왕주예(부경대)

- 4. 중국 관광회사의 주가변동성에 관한 연구 : DCC-BEKK 모형 117
발표: 왕야리(부경대)

한국무역통상학회

- 팬데믹 시대, 국제중재의 변화와 발전

발표: 오현석 교수(계명대)

- 부산 신행이 인근지역의 생활여건에 미친 영향

발표: 김창수 교수(부산대)

팬데믹 시대, 국제중재의 변화와 발전

오현석 교수
(계명대)

팬데믹 시대, 국제중재의 변화와 발전

2021년 6월24일

계명대학교 국제통상 전공

오 현 석 (ohs1905@km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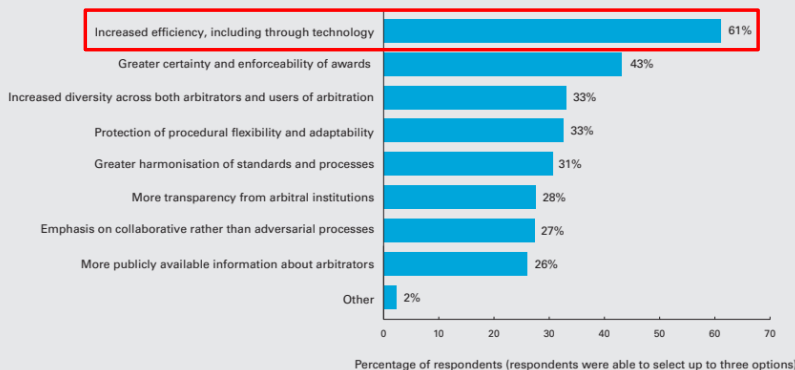


계명대학교
KEIMYUNG UNIVERSITY

I. 국제중재에 대한 변화 요구 (1)

1. IT 기술을 이용한 효율성 제고

Chart 40: In your view, which of the following factors will have the most significant impact on the future evolution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 Queen Mary 대학의 보고서에 의하면 향후 국제중재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IT 기술 등을 이용한 효율성의 증대에 주목하였음
- 특히, 이전과는 달리 크게 발전한 IT 기술은 화상회의 시스템 등을 통해 국제중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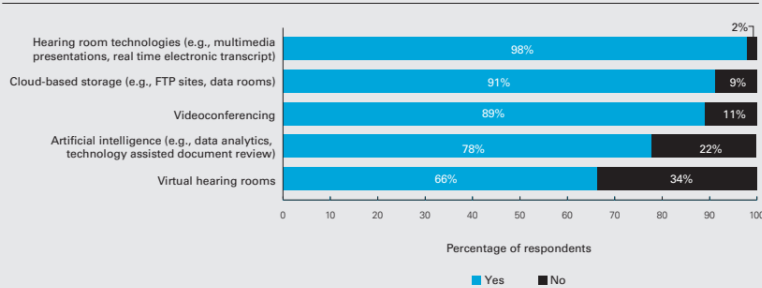
* '13 SIDRC 화상회의시스템

※ 2018 International Arbitration Survey: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매년 국제중재에 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2019년과 2020년에는 국제투자중재(ISDS)에 관한 것이었음. 2021년 5월에 'International Arbitration Survey: Adapting Arbitration to a Changing World'가 발간예정

2. 중재에서 활용 가능 IT 기술

Chart 36: Should the following forms of information technology be used more often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① 첨단화된 중재심리실

- 다양한 미디어 기기(대형 스크린, 아이패드 등 개별기기)를 통해 서증 및 입증자료에 대한 가독성 제고
- 실시간 속기록 솔루션을 통해 심리진행 중 기록을 즉시 확인할 수 있음

cf. CISCO WEBEX

- ② 데이터의 편리한 이용 및 저장 : 클라우드 솔루션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 이용, FTP(File Transfer Protocol)를 통해 중재인과 당사자 간 파일의 편리한 전송, 가상 데이터 룸을 통해 중요한 문서의 저장 등
- ③ 화상회의 시스템 : 인터넷 속도 개선, 카메라 등 IT 기기 및 솔루션(zoom, google meet 등)의 발전으로 인해 화상회의에 전혀 어려움이 없으며, Covid-19로 인해 활용이 보편화 됨
- ④ 인공지능(AI)을 통한 데이터분석 : 중재인 선정 시 중재인의 성향 및 전문성, 사건경험 등을 빅데이터에 의해 분석하여 당사자에게 정보 제공)
- ⑤ 가상현실 : 현장검증, 사고현장 시뮬레이션, 증인신문 등에 활용

Copyright by Keimyung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 ICC Guidance Note on Possible Measures Aimed at Mitigating the Effects of the COVID-19 Pandemic

- 2020. 4. 9. ICC는 당사자, 법률대리인 및 중재판정부에 코로나19 사태가 ICC 중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고려될 수 있는 가능한 조치들에 대한 지침을 제공
- 서류 송달 및 통지 : 중재신청서, 기타 관련 서류들이 전자적 형태로 제출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 (cf. Article 3(2) of the 2021 ICC Rules). 당사자들에게 중재판정부의 전자적 통지에 동의할 것이 권장됨 (강제 x)
- 회의 또는 심리 진행 관련 중재규칙 해석 : 중재규칙 제25조 제2항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제출서면 및 일체의 근거 서류들을 검토한 후, 일방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당사자들과 함께 직접(in person) 만나 심리하여야 한다"고 규정. 상황에 따라 심리가 화상 등의 수단을 통해 "직접(in person)" 시행되는 것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해석 (cf. 중재규칙 개정 Article 26 (1) of the 2021 ICC Rules에 videoconference 명시)
- 사이버규약 : 화상심리를 위하여 관련 정보보호 규제를 준수하기에 충분한 조치들을 시행하기 위한 중재판정부와 당사자들 간의 협의 강제 (cf. 동 지침 부속서 : SUGGESTED CLAUSES FOR CYBER-PROTOCOLS AND PROCEDURAL ORDERS DEALING WITH THE ORGANISATION OF VIRTUAL HEARINGS)

cf. Seoul Protocol on Video Conferencing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 ICC 심리센터 : 화상심리 및 전자심리기록 설비를 운용함에 있어 중재절차의 무결성, 비밀유지, 정보보호를 확보하기 위한 표준 기술지원 제공. 화상심리시설 공동 이용을 위한 타 중재심리센터들과 양해각서 체결
- 화상심리를 위한 플랫폼 제공 (cf. Microsoft Teams, Vidyocloud, Skype for Business 플랫폼 라이선스 확보)
- 전자심리기록을 위한 다양한 문서공유 플랫폼이 제공 (cf. Opus, Transperfect, XBundle 등 제공 솔루션)

Copyright by Keimyung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 **IBA Rules on the Taking of Evidence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2020. 12. 17. 개정)**

- DEFINITIONS : 'Remote Hearing'에 관한 정의 조항 추가 (a hearing conducted, for the entire hearing or parts thereof, or only with respect to certain participants, using teleconference, videoconference or other communication technology by which persons in more than one location simultaneously participate)
- Cybersecurity and data protection (Article 2.2(e)) : 중재판정부가 당사자들과 협의해야 할 증거조사 이슈(evidentiary issues)에 사이버보안과 정보보호를 포함시킴 (cf. European Union's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 ARTICLE 8(2) (Remote Hearing) :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Remote Hearing을 개최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Remote Hearing protocol을 규정할 수 있음(cf. 고려사항으로 (a) the technology to be used; (b) advance testing of the technology or training in use of the technology; (c) the starting and ending times considering, in particular, the time zones in which participants will be located; (d) how Documents may be placed before a witness or the Arbitral Tribunal; and (e) measures to ensure that witnesses giving oral testimony are not improperly influenced or distracted 등이 있음)

※ 이전 2010 IBA 규칙 개정

2010년 개정에서 '문서'는 "서면으로 기록 또는 보관되거나, 또는 전자, 음성, 시각 수단이나 기타 수단에 의한, 모든 유형의 서면, 교신, 사진, 도면,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로 정의되었음. 즉, 이미 동 규칙에서는 이메일이나 그 첨부 문서,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모두 '문서'에 포함시키고 있음

❖ **HKIAC GUIDELINES FOR VIRTUAL HEARINGS**

- 2020. 5. 15. HKIAC는 HKIAC GUIDELINES FOR VIRTUAL HEARINGS을 발표하여 화상심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
- Complete HKIAC's online enquiry form : 화상심리에는 부분적으로도 참여할 수 있으며, 심리 준비를 위해 당사자들에게 a. video conferencing; b. audio conferencing; c. electronic bundling and presentation of evidence; d. transcription services; and e. interpretation services. 등에 관한 설문을 조사하고,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HKIAC 직원이 24시간 이내 응답하는 시스템 구축
- Arrange testing with all participants in advance of the hearing : 화상심리 개시 전 모든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화상심리에 대해 이해하고 테스트를 해보는 기회 제공
- HKIAC 제공 서비스 : IP-based encrypted video conferencing, cloud-based video conferencing compatible with all major video conferencing platforms (Zoom, Cisco Webex, Microsoft Teams, Bluejeans), back-up system for each hearing in consultation with the participants, 'hearing manager' 상시 대기 등
- 사이버보안 및 정보보호 : 회의장 입장을 위한 암호 설정, 심리 참석자는 심리 개시 전 중재판정부 및 당사자 모두에게 소속, 이름을 공람하여 참석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함
- Transcription services : 속기가 필요한 경우 당사자는 사무국에 사전에 요청하여야 하고, 실시간 속기 또는 원격지에서의 속기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선택을 해야 함
- Interpretation services : 통역이 필요한 경우 역시 사무국에 사전에 요청해야 하고, 동시통역 또는 순차통역 여부 역시 선택을 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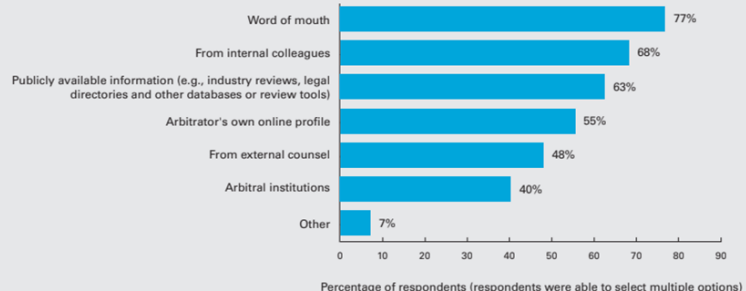
❖ 'agreement in writing'

- 뉴욕협약 제2조 : '서면에 의한 합의'는 교환된 서신이나 전보에 포함되어 있는 중재의 합의 포함
- 중재법 제8조 : 1. 구두나 행위, 그 밖의 어떠한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재합의의 내용이 기록된 경우; 2. 전보(電報), 전신(電信),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전자적 의사표시에 중재합의가 포함된 경우
- 뉴욕협약에 가입한 대부분의 국가의 중재법에서는 중재합의의 '서면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적 수단에 의한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2016년 중재법 개정을 당사자가 이 메일들을 주고받으면서 중재하기로 합의한 경우 별도의 서류가 없더라도, 또 당사자들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더라도 그러한 중재합의를 유효한 중재계약으로 인정
- 중재개시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인 '중재합의'부터 IT 기술의 적용에 의한 유효성을 인정해야 할 것임 (cf. 전화통화 또는 화상회의시 구두에 의한 중재합의, 체크박스 등에 의한 전자계약서 상의 중재합의 등 다양한 IT 기술에 의한 중재합의의 유효성 문제)
- 반면, 일부 국가에서는 e-mail 등에 의한 중재합의의 서면성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으며, 중재합의의 유효성 문제는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으로는 보완할 수 없는 사항임
- 따라서, 각 국의 중재법 개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뉴욕협약의 '서면성' 개정 (x) → 전자적방식에 의한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기 위해 별도의 추가협약 가능성 검토 (cf. UNCITRAL WG) cf.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ransparency in Treaty-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 (2014)

❖ 중재인에 대한 정보제공

- 구전이나 제3자를 통한 평판도 조회, 중재기관 제공 CV, 중재인 온라인 프로필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고 있음
- 그러나, 중재절차의 비공개로 인해 중재인의 이전 사건에서의 중재판정 성향(cf. 투자중재) 등을 파악하기 힘들고, 중재인의 이해충돌관계를 중재인의 고지를 통해서만 인지할 수 있음

Chart 19: Where do you find your information about arbitrators?



- 따라서, 당사자들이 중재인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한 후 중재인을 선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정보제공 방식으로 기존의 온라인 프로필 외에도 가상현실 영상에 의한 본인 소개, AI를 통한 중재인 검색 등 첨단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중재인의 개인정보보호

❖ 리스트 방식의 중재인선정 시 IT 기술 활용

- 일부 중재기관에서 당사자들이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사무국에서 리스트 방식에 의한 중재인 선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이때 온라인을 통한 선호도 표시 등에 대해 법적·기술적 문제 검토 필요

❖ 중재판정문의 전자적 통지

ICC의 중재판정문 전자적 통지

(i) 중재인들이 중재판정문의 각 부분에 개별적으로 서명할 것 → (ii) 중재규칙 제35조에 의해 사무국이 그러한 일체의 부분을 단일한 전자파일로 취합한 후 이메일 또는 송부기록을 제공하는 기타 수단을 통하여 당사자들에게 통지할 것 (다만, 당사자들은 가능할 경우 중재판정문의 전자적 통지에 동의할 것이 권장됨)

[ICC Guidance Note on Possible Measures Aimed at Mitigating the Effects of the COVID-19 Pandemic]

- 우리 중재법 제32조 제1항 “중재판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중재합의의 서면성과 같이 전자적 수단에 의한 중재판정문(ex. PDF 파일)의 법적효력에 문제가 없는가?
- 아울러, 중재법 제32조 제4항의 정본(正本)과 원본 개념 규정 → 전자적 수단에 의한 중재판정문에도 동일하게 정본 및 원본 개념이 필요한가?
- 전자적수단에 의한 중재판정문의 외국에서의 집행 시 문제 없는가? (각 국 중재법 문제)
- 뉴욕협약의 규정과는 충돌하지 않는가?

뉴욕협약 제4조 제1항

1. 전조에서 언급된 승인과 집행을 얻기 위하여 승인과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당하게 인증된 중재판정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 2) 제2조에 규정된 합의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

1. 긍정적 측면

- 중재비용의 감소 : 오프라인 중재에 비해 비용 절약 가능(cf. 심리실 임차료, 중재판정부 및 당사자들의 심리참가를 위한 항공료 및 체재비 등 경비, IT 기기에 의한 실시간 속기 및 통역을 통한 비용 절감 등)
- 신속성 제고 : 오프라인 심리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중재판정부와 당사자들간 일정 협의 필요(cf. 기존 매년 1~2회의 집중심리 개최 → 중재절차 지연 심화). (장소와 시간의 제약이 없는) 언택트 중재시 필요할 때 수시로 중재심리 개최 가능
- 중재대상 확대 가능 : 비용의 절감을 통해 소액분쟁 사건에도 국제중재가 가능 → 소비자 중재

2. 우려 사항

- 사이버보안, 개인정보 문제 등 (ex. 딥페이크 영상)
- 언택트 중재에 대한 각 국가들의 상이한 법규정
- IT 기술 격차에 따른 문제 (ex. 인터넷속도, 영상 및 음성 기기 성능 등)

➢ 케빈 나쉬 (SIAC) : “사건 관리 시스템 및 전자문서제출 시스템 등을 구축해 훨씬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중재가 가능해졌다”

➢ 페델마 스미스 ((PCA) : “전 세계 화상 심리는 참여자 모두에게 맞는 시간대를 골라야 하는 시차의 문제를 야기하지만 반대로 심리가 가능한 시간대를 좁혀 주는 측면도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중재인에게 요구되는 ‘신속’ ‘정확’ ‘유연’이란 특성이 더 부각된다. 앞으로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더 많이 화상 심리를 활용하게 될 것이며, 다만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출처 : 제9회 아시아-태평양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ADR) 컨퍼런스 관련 언론 기사]

1. 순수 언택트 중재기관 설립 가능

- 화상회의를 중심으로 IT 기술을 활용한 언택트 전용 중재기관이 설립 가능. 즉, 기존 중재기관과 같이 중재심리실 등을 갖춘 중재기관이 아닌 온라인 상에서만 존재하는 중재기관 출현 가능
- 첨단 화상회의 시스템, 클라우드 등을 통한 심리자료의 편리한 이용 등 경쟁력 있는 첨단 IT 시설을 확충할 경우 높은 위상 확보 가능

2. '중재지' 개념 변화

- 파리, 영국, 싱가포르, 홍콩 등이 중재지로 많이 지정이 되었으며, 이는 선진화된 중재법, 지리적 위치의 이점으로 인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여짐 (cf. 오프라인 중재심리 시 중재인 및 당사자의 이동 역시 고려됨)
- 순수 언택트 중재기관 출현 시 오프라인 중재심리 개념이 희박해지고, 따라서 중재기관이나 중재심리장소는 전혀 고려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
- 오히려, 중재인이나 중재기관의 세금 절약을 위해 조세회피지역에 중재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선호될 수도 있음 (ex. 버진아일랜드, 버뮤다 등)
- 언택트 중재에 최적화된 중재법을 마련한 국가를 중재지로 선정할 가능성 ↑

3. 기존 중재기관의 지각변동 가능성

- 기존 ICC, SIAC, LCIA, AAA, HKIAC 등으로 정리되는 중재기관의 순위가 크게 변동될 가능성이 큼. 즉, 언택트 중재를 위한 IT 기기 역량, 선진 중재규칙의 마련 정도에 따라 당사자들의 선호도가 변화할 가능성
- 기존 중재기관 선정 이유 중 지리적위치 등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음
- SIAC, HKIAC 등 영미법계, 영어권 국가 등의 혜택 → AI에 의한 실시간 통번역 시스템 활용 ?
- 중재기관 간 빈익빈 부익부 심화 → 적응하지 못하는 중재기관의 도태 가능성 ↑

4. 국제중재사건의 큰 폭 증가

- 중재심리를 위한 이동 및 체재비용 → 화상회의 등 대체로 인해 비용 절감
- 중재기관의 높은 관리비용 → 1인 중재기관 내지 ad hoc 중재 활성화에 따른 비용 감소
- 언어문제로 인한 비용 → AI를 통한 실시간 통번역 기술에 의해 언어장벽 역시 붕괴
- 분쟁가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중재비용을 인해 국제중재를 기피하던 분쟁들이 저렴해진 비용을 인하여 국제중재로 다시 유입될 가능성 ↑ (ex. 5억 이하의 국제분쟁)
- 특히, 소비자중재 전문기관 출현 시 소비자중재 활성화 가능 (cf. 중재합의 유효성 문제?)
- 국제상사조정과 연계 : 국제상사조정 합의 실패 시 중재합의를 통해 국제중재 진행

5. *ad hoc* 중재 증가

- 일종의 장치산업 내지 전시산업 성격이 있었던 중재산업의 높은 장벽이 붕괴 → *ad hoc* 중재 활성화
- 당사자 사이 중재심리 및 절차만을 관리해주는 전문 *ad hoc* 중재 관리 에이전시 설립 가능

6. 1인 중재기관 설립

- 유명 중재인의 경우 본인이 직접 중재기관 설립 후 중재인으로 활동 (cf. 1인 중재기관) : 중재인 + 중재 사건 관리 등 원스톱 처리 (cf. Michael Hwang Co., Philip Yang Co. etc.)

- 중재인의 소득세, 중재기관의 법인세 절감을 위해 조세회피지역에 법인 설립 선호상 확대

cf. 화상을 통해 원격지에서 심리에 참여하는 중재인에 대한 세금 부과 문제 → IT 기업들의 디지털세 논의

※ 우리의 대응 방안

-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국제중재기관의 위기이자, 후발주자인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
- 언택트 국제중재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때를 대비하여 화상회의 시스템, 클라우드 등을 통한 데이터의 편리한 저장과 이용, AI 등을 활용한 중재인 및 사건 분석시스템 연구, 사이버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준비
- 아울러, 중재법, 중재규칙 등 법제도적 기반 정비를 통해 언택트 국제중재를 최적화
(cf. 중재인들의 소득세, 당사자들의 부가가치세 등 세금문제 해결 고민)
- 이전과는 다른 사무국 전문인력 확보 필요성 (ex. IT 전문가, 언택트 중재 매니저 등)

부산 신항이 인근지역의 생활여건에 미친 영향

김창수 교수
(부산대)

부산항 제1신항이 인근 지역의 생활여건에 미친 영향

〈부산대학교 무역학부 김창수〉

I. 연구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는 수출입물류의 결절점(node)인 항만 주변에 산업단지 등 주요기반시설을 설치하여 항만 인근에 인구 집중 및 도시 발전(최진이, 2020)
 - 항만은 배후도시의 경제 및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김안호·기성래, 2005) 배후도시 주민의 삶의 질에도 긍정적 영향(김상구, 2012; 김용민, 2014)을 미치나 환경적 측면에서는 부정적 영향(김용민, 2014; 양창호, 2021)
 - 그간 항만이 국가와 도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산업연관 분석 등 경제적 분석 방법을 활용한 경제적 영향에 집중
- 지역경제에 항만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진행되었지만 항만과 도시 간 관계에 관한 연구는 드문 상황(최진이, 2020)
 - 특히 항만 건설·운영에 따라 경제사회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항만 인근지역에 대한 연구는 드문 상황
 - * 부산항 제1신항이 인근 강서구와 진해구에 미친 사회경제적 영향 등
 - 또한, 항만이 항만 인근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에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도 미진한 상황
- 본 연구는 부산항 제1신항이 인근 지역 주민의 생활여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힘으로써 항만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II.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 항만이 조성되어감에 따라 항만 인근의 배후부지, 산업단지 등에는 제조업체와 물류업체가 입주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고 항만인근 지역의 인구를 증가 → 늘어난 인구로 말미암아 항만인근 지역의 생활여건도 점차 개선

□ 항만 조성 → 인근지역의 고용 증가

○ 항만 적시 공급과 높은 항만 생산성은 물류비를 절감함으로(김성철 외, 2009) 항만을 중심으로 산업 집중 및 비즈니스 활동 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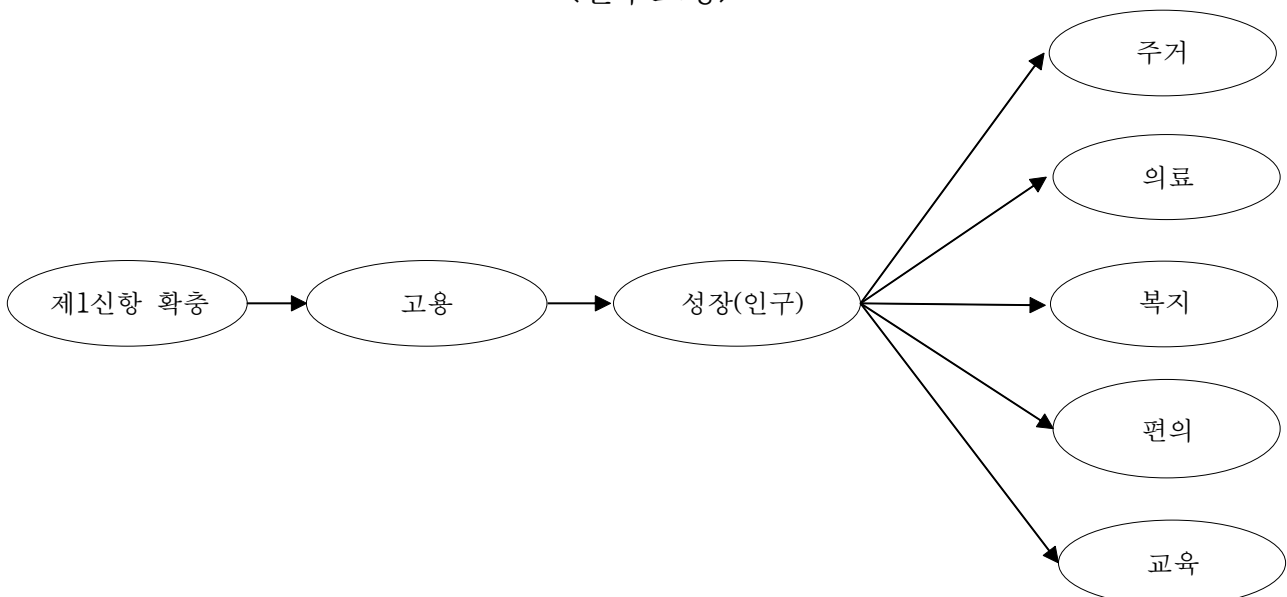
□ 항만 인근지역의 고용 증가 → 인근지역의 인구성장

○ 항만 인근지역에 집적된 산업과 비즈니스 활동은 항만 인근지역 경제 활성화, 소득 증대 및 인구 성장에 기여(여기태 외, 2016)

□ 항만 인근지역의 인구증가 → 항만 인근지역의 생활여건 개선

○ SOC 등 정부 사업의 예산 편성·집행 시 인구는 중요한 평가기준

〈연구모형〉



Ⅲ. 주요개념 및 연구방법

1. 생활여건

- 통계청 사회조사는 국민 삶의 질의 수준과 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의 하나로 생활여건(보건의료, 사회보장, 문화·여가 생활 향유 여건, 전반적인 생활여건)의 변화를 2년마다 조사
 - 본 연구는 통계청의 생활여건 중 사회보장과 문화·여가 생활 향유 여건을 복지라는 개념으로 통합하고,
 - 통계청의 생활여건을 보다 확대하여 주거·교육·편의 시설도 생활 여건에 포함시켜 분석

2.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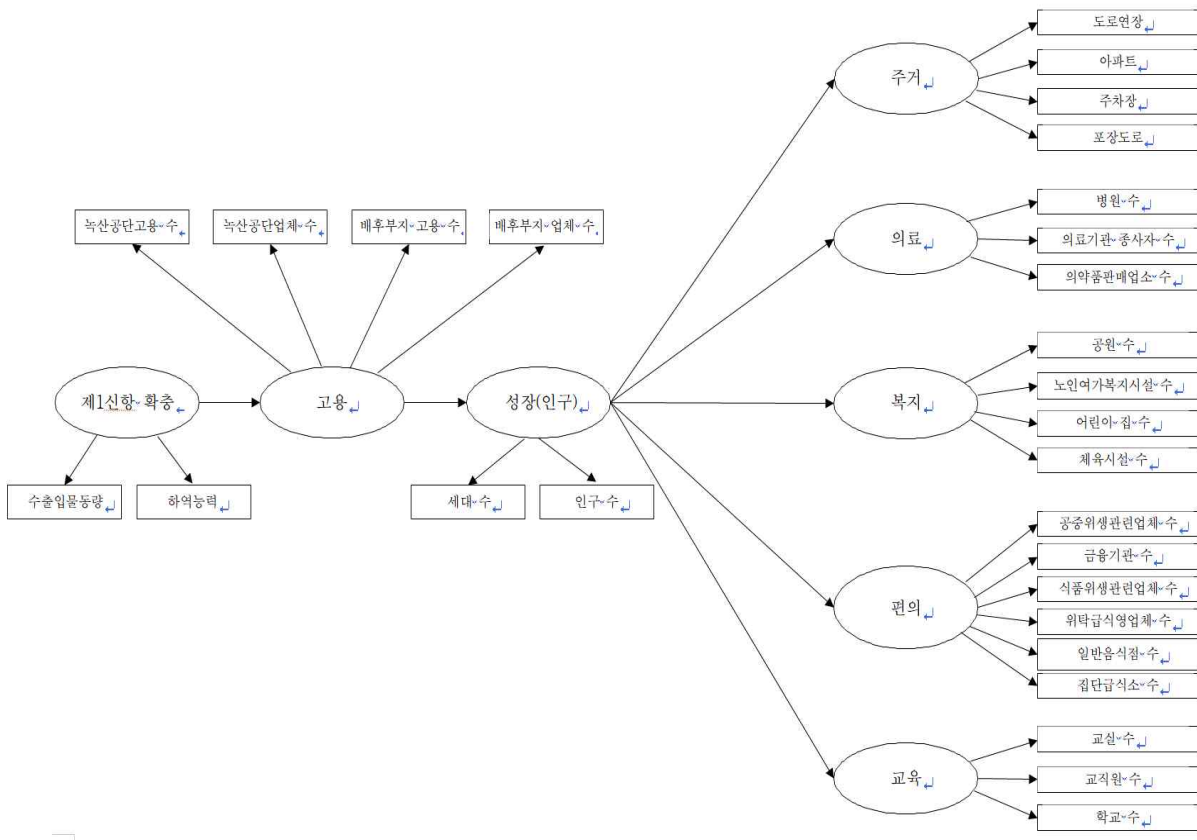
- (연구범위) 부산항 제1신항의 개발·운영과 강서구 생활여건 개선 간의 관련성과 인과관계를 검증
- (자료수집) 부산항 제1신항 확충 관련 자료는 해양수산부와 항만 공사 자료를, 고용관련 자료는 녹산산업단지와 해양수산부 자료를, 인구와 생활여건 지표는 강서구의 연도별 통계집을 활용
- (자료분석) 부산항 제1신항이 개장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데이터를 사용하여 표본수가 부족하므로 정규분포를 가정하지 않고 소규모 표본에 적합한(Hair et al. 2017) PLS 구조방정식 모형 사용

* PLS-SEM은 주로 탐색적 연구에서 이론을 개발할 때 사용

〈구조방정식 모형에 사용된 변수·지표와 활용자료〉

잠재변수		설명변수(지표)	활용자료
부산항 제1신항 확충		신항 수출입물동량	부산항만공사 자료
		신항 하역능력	해양수산부 자료
인근지역 고용		녹산공단 고용자 수/입주업체 수	강서구청 연감
		신항 배후부지 고용자 수/입주업체 수	해양수산부 자료
인근지역 성장(인구)		강서구 세대수/인구수	강서구청 연감
인근지역 생활여건	주거	도로연장, 아파트, 주차장, 포장도로	강서구청 연감
	의료	병원, 의료기관종사자, 의약품판매업소	강서구청 연감
	복지	공원, 노인여가복지시설, 어린이집, 체육시설	강서구청 연감
	편의	공중위생영업, 금융기관, 식품위생관계업소, 위탁급식영업,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강서구청 연감
	교육	교실, 교직원, 학교	강서구청 연감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형〉



IV. 실증분석결과

□ 분석결과, 설명력(R^2)은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남

〈 R^2 값〉

독립/종속 변수	R Square	수정결정계수
고용	0.954	0.950
인구	0.713	0.687
주거	0.928	0.922
의료	0.997	0.996
복지	0.921	0.914
편의	0.940	0.935
교육	0.902	0.8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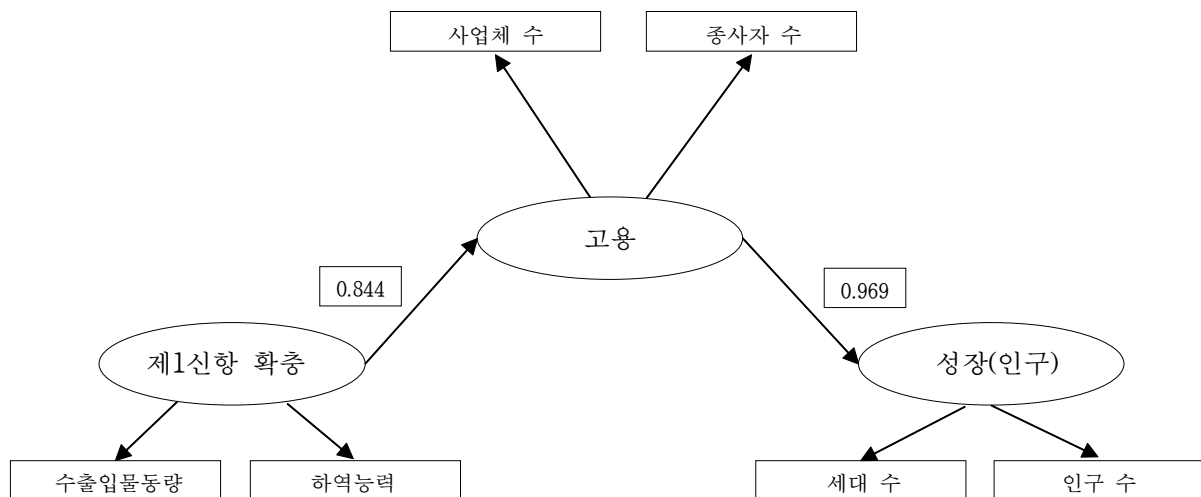
□ 분석결과, 모든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변수 간 경로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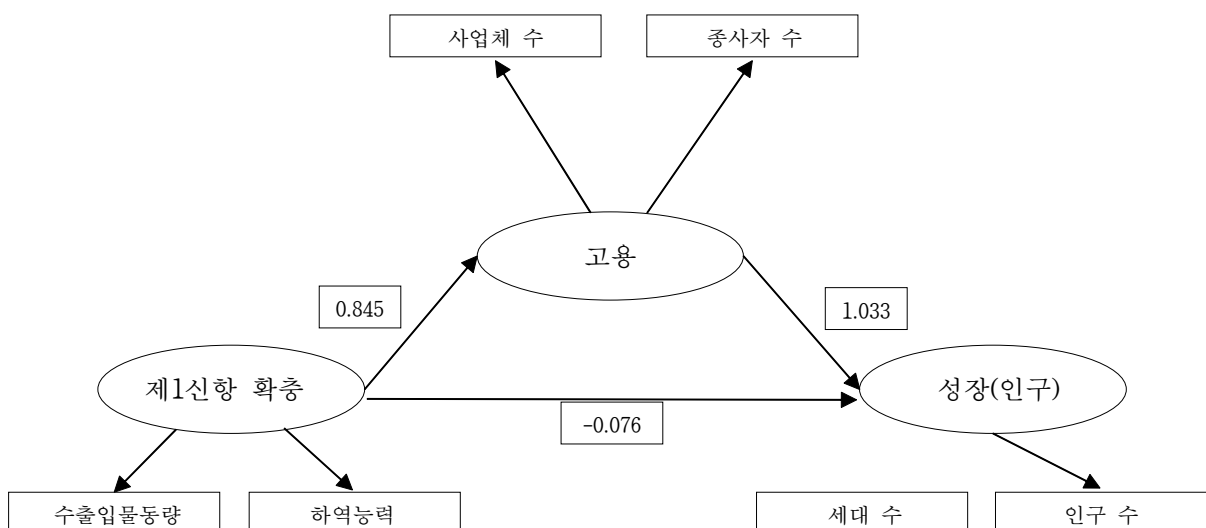
	원표본	표본평균	표준편차 (STDEV)	T통계량	p-value
부산항 제1신항 확충 → 고용	0.977	0.974	0.018	54.046	0.000
고용 → 인구	0.845	0.862	0.040	21.053	0.000
인구 → 주거	0.963	0.966	0.019	50.039	0.000
인구 → 의료	0.998	0.998	0.002	594.735	0.000
인구 → 복지	0.960	0.961	0.014	67.394	0.000
인구 → 편의	0.970	0.969	0.013	74.126	0.000
인구 → 교육	0.950	0.954	0.021	45.407	0.000

□ 고용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고용이 제1신항 확충과 강서구 인구 증가를 완전매개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아래 그림에서 제1신항 확충 → 고용, 고용 → 성장(인구)의 경로 분석은 p값이 0.000(t값 각각 16.454, 63.543)으로 유의미



○ 아래 그림에서 제1신항 확충 → 고용, 고용 → 성장(인구)의 경로 분석은 p값이 0.000(t값 17.778, 7.463)으로 유의미하나, 제1신항 확충 → 성장(인구)의 경우 p값이 0.615(t값 0.503)로 유의미하지 않음



V. 결 론

- (기여) 본 연구는 항만의 개발과 운영이 행정구역 상 “구” 단위인 항만인근지역의 생활여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
 - 부산항 제1신항은 강서구 고용증가를 통해 강서구 생활여건 개선에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음
 - 부산항 제1신항 확충이 강서구 생활여건 개선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고 완전매개효과를 가진 고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
- (함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만의 개발·운영은 해양환경오염, 소음, 교통체증 등 인근지역 주민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최진이, 2020)
 -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항만 개발과 운영이 인근지역의 생활여건 개선 뿐만이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삶의 질 개선을 가져올 수 있도록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필요
- (한계) 부산의 신도시 건설(명지국제신도시)이 강서구 인구증가를 가져온 것도 부정할 수 없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신도시 건설도 포함하여 분석할 필요
- (향후 연구과제) 주민의 생활여건 보다는 주민의 삶의 질이나 사회경제적 영향이 보다 광범위하고 중요한 개념으로 보이므로 항만이 인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미친 영향 내지 인근 지역에 미친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도 필요

제1분과

한국외대 EU 연구소

1. 입지계수 분석을 통한 한국기업의 효율적 브라질 시장 진출방안 모색
발표: 정호윤 박사(부경대)
2. 문화재의 거래에 대한 법적 쟁점
- 준거법을 중심으로 -
발표: 최재원 박사(한국외대)
3. 중앙아시아 방산산업의 현황
- 아제르바이잔과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
발표: 양우진 박사(한국외대)

입지계수 분석을 통한 한국기업의 효율적 브라질 시장 진출방안 모색

정호윤 박사
(부경대)

입지계수 분석을 통한 한국 기업의 효율적 브라질 시장 진출방안 모색*

정호운(부경대 글로벌지역학연구소 전임연구원)

I. 서론

바야흐로 세계화 시대가 도래 하면서 그 어느 때 보다 기업의 세계화와 성장이 국가 경제성장 동력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일찍부터 수출 지향적 정책에 주력해 왔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사실은 더욱 자명해진다. 전 세계 곳곳이 그물망처럼 엮어진 작금의 상황 속에서 현재 및 앞으로 닥칠 세계경제 위기로 인해 받을 우리나라의 충격과는 더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를 최소한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전통적 시장에 대한 높은 경제 의존도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시장다변화를 꾀하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듯 우리나라 최대의 무역흑자시장인 중남미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증가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진출하였거나 앞으로 진출이 계획되어 있다는 사실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항상 미래의 나라로만 불리던 브라질이 잠재력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중남미 진출의 거점지역 혹은 테스트베드(test bed)지역으로 부상함에 따라 이미 많은 대기업들은 브라질에 진출하여 현지생산부터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단계까지 발전하였다. 이는 물라 정부 시절 팽창한 브라질의 경제적 성과 덕분으로 투자하기에 좋은 나라로 거듭난 덕분이었다. 한때 세계 최대 신흥시장 채무국이었던 브라질은 국제준비금이 기록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1월 처음으로 순 채권국이 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2008년 후반에 브라질 채권이 투자 적격등급에 오르는 결실을 낳았고, 금융 안정성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에서 투자 적격 등급을 받으면서 브라질은 저 신용 등급 국가를 피하는 기관 투자자들을 더 많이, 더 다양하게 모을 수 있었다(Roett 2011, 163). 비록 2013년 이후 브라질이 경기 침체를 겪고 있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은 여전히 거대한 내수시장과 자원부국으로써 매력적인 투자지역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 기업의 브라질 현지 진출은 질적, 양적 측면에서 과거에 비하여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아쉬운 점이 여럿 노출된다. 그 중에 하나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대 브라질 진출의 지역

* 본 발표문은 저자의 2012년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공동학술회 발표 원고인 “한국 기업의 효율적인 브라질 지역시장 진출 연구: 입지계수(LQ)를 통한 브라질 각 주(州)별 산업특화도 분석을 중심으로”를 기반으로 부분 발췌 및 수정되어 작성되었으며, 최근의 데이터를 확보하여 업데이트 및 새롭게 분석한 후속적 연구를 밝혀둠. 기존 연구는 2012년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공동학술회 자료집에 수록되어 있으며, 학술지에 게재된 바 없음.

적 편중성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기업은 주로 브라질 상파울, 등의 남동부지역 거점도시에 집중적으로 진출해 있으며 이에 따라 브라질 내 시장저변 확대를 위한 전국적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 시장을 선점하는데 있어 문제점이 노출된다. 이는 여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한 산업, 인프라, 우수인력을 갖추고 있는 남동부지역이 기업의 진출에 있어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이기는 하나 브라질의 성장세에 따라 본격적인 지역별 개발수요가 증가하는 현재 추세에서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브라질 지역시장 진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우리기업의 브라질 지역별 진출을 위한 산업특화도 분석 및 전략을 제시한 연구물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는 입지계수법(location quotient: LQ)을 통하여 각 주(州)별 산업특화도의 분석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에게 효율적인 브라질 지역시장진출을 위한 유용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II.1. 경제-기반 분석

지역의 경제구조 및 성장의 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분석기법의 하나로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경제-기반 분석(Economic-base analysis)이 언급되고 있다. 경제-기반 분석은 케인즈(J.M.Keynes)의 승수이론(multiplier theory)을 토대로 프랑스의 티부(C.Tiebout), 미국의 호이트(H.Hoyt)와 와이어(A.M.Weimer) 등에 의해 개발되고 체계화된 분석기법이다. 케인즈의 승수이론에 따르면 부족한 유효수요의 창출이 파급효과를 발생시켜 결국에는 승수 배 만큼 국민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지역의 산출 중 기본적으로 지역의 소비활동에 사용되지 않고 더 많은 투자나 수출활동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지역경제의 성장에 탄력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박종화 1997, 270). 이러한 경제-기반 분석은 지역의 경제기반 연구 뿐 만 아니라 산업 입지 분석에 유용한 틀을 제공해 준다.

경제-기반 분석은 지역산업이 크게 두 가지 활동부문으로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설정한다. 하나는 기반산업(basic industries)이고 다른 하나는 비기반산업(non-basic industries)이다. 기반산업은 지역외부시장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수출하는 반면, 비기반산업은 지역내부에서 소비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한다(Smith 1971, 100). 따라서 경제-기반 분석은 수출시장이 확장되어 수출이 증가하면 기반산업이 성장하고 이에 따라 비기반산업 또한 연쇄적인 성장이 유도된다고 설명한다. 즉, 지역경제의 성장요인으로서 첫째, 외부의 수요팽창과 그에 기인한 수출증대이며 둘째, 수출 증가로 인해 반응하는 내부의 고용 및 소득의 팽창에 이루어진다고 본다(황명찬 2001, 109).

II.2. 경제-기반 분석 방법 : 입지계수

경제-기반 분석에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지만 본고에서는 입지상의 활용방법을 선택하였다. 입지계수는 한 지역의 산업을 전국의 동일 산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중요도를 측정할 수 있는 분석기법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지역의 해당 산업의 상대적 특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입지계수의 값이 1보다 크면 해당부문의 수출활동이 존재한다고 보고, 1이하일 경우에는 지역 내 활동으로 한정된다고 가정한다.

입지상의 측정변수로는 지역의 경제적 활동을 나타낼 수 있는 해당 산업의 생산액, 부가가치액, 노동생산성 등이 모두 가능하지만 흔히 자료구득의 용이성 등으로 고용자 수가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다(박종화 1997, 272). 해당지역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특정산업이 전국적 차원에서의 동 산업에 비하여 고용 혹은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기반산업으로, 반대의 경우에는 비기반산업으로 분류가 가능하다는 가정 하에 입지상계수법을 구한다(김상호 2006, 105-106). I지역의 j산업의 입지계수(LQ_{ij})는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 도출된다.

$$LQ_{ij} = \frac{E_{ij}}{E_i} \bigg/ \frac{E_j}{E}$$

E_{ij} : i지역 j산업의 생산액 혹은 고용인구

E_i : i지역의 생산액 혹은 고용인구

E_j : 전국 j산업의 생산액 혹은 고용인구

E : 전국의 생산액 혹은 고용인구

이를 통해 산출된 입지계수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박종화 1997, 273).

① LQ_{ij} > 1인 산업은 기반산업으로 간주된다. 즉, i지역 j산업은 전국적인 비율로 보았을 때 자체 소비를 하고도 남는 잉여부문이 존재한다는 것이므로 그 부분만큼은 다른 지역으로 수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이다. 이때, i지역 j산업은 전국과의 비교에서 특화산업으로 인정된다.

② LQ_{ij} = 1일 경우, i지역 j산업의 생산품은 자급자족을 한다고 볼 수 있으며 비기반산업으로 간주된다.

③ LQ_{ij} < 1일 경우, i지역 j산업에 대한 상품을 다른 지역으로부터 수입해서 쓴다고 볼 수 있으며, 비기반산업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입지계수법은 적용이 간편하고 논리적인 설득력이 비교적 높다는 측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고, 소규모지역이나 대규모지역에도 활용할 수 있으며, 분석의 필요성과 자료의 수집정도에 따라 농업에서부터 제조업까지 비교적 다양하고

세분화된 부문까지도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홍기용 1997, 501; 박종화 1997, 273).

Ⅲ. 브라질 각 주별 산업특화도 분석

제 3장에서는 브라질 각 주별 산업특화도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둔다. 본고에서 활용한 통계자료는 앞서 기술한대로 브라질지리통계청(IBGE)의 ‘Cadastro Central de Empresas’ 통계자료 중 2009, 2018년 산업종사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2007년 개정된 브라질표준산업코드인 CNAE 2.0의 산업별 대분류를 적용하였다. 또한 입지계수를 도출하는데 쓰인 변수는 고용자수이다. 또한 브라질 산업별 특화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2009년과 2018년의 입지계수를 토대로 [그림1]과 같은 분류를 통해 브라질의 각 주(州)별 특화산업을 파악하였다.

그림 1. 입지계수에 따른 산업경쟁력

LQ 증가(+)	비특화 산업 LQ 증가추세	특화 산업 LQ 증가추세
LQ 감소(-)	비특화 산업 LQ 감소추세	특화 산업 LQ 감소추세
LQ=0	LQ=1	LQ=2

본고에서는 2018년의 입지계수 값이 2009년 입지계수 값 대비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1 초과일 경우 및 감소추세를 보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결과 값이 1초과일 경우에 특화산업이라고 추정하였다. 즉 $LQ_{09} > 1$ 일 때 해당산업은 특화산업이라고 본다.

1. 입지계수 분석

표 1. 브라질 지역별 산업 입지계수 비교(2009-2018)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LQ 09	LQ 18	+ -	LQ 09	LQ 18	+ -	LQ 09	LQ 18	+ -	LQ 09	LQ 18	+ -
Rondônia	0.42	0.32	-0.10	0.74	0.96	+0.22	0.61	0.70	+0.09	2.05	2.51	+0.46
Acre	0.77	0.44	-0.33	0.21	n/a	n/a	0.32	0.29	-0.03	n/a	n/a	n/a
Amazonas	0.12	0.07	-0.05	0.78	0.59	-0.19	1.11	1.03	-0.08	1.71	1.50	-0.21
Roraima	0.49	n/a	n/a	0.21	n/a	n/a	0.18	n/a	n/a	n/a	3.26	n/a
Pará	1.61	1.88	+0.27	2.51	4.34	+1.83	0.58	0.49	-0.09	1.31	n/a	n/a
Amapá	0.58	n/a	n/a	2.07	n/a	n/a	0.18	n/a	n/a	3.76	1.30	-2.46
Tocantins	1.19	1.86	+0.67	0.77	0.61	-0.16	0.35	0.36	+0.01	1.93	2.08	+0.15
Maranhão	1.75	1.36	-0.39	0.45	0.45	0.00	0.33	0.30	-0.03	1.14	0.97	-0.17

Piauí	0.98	0.86	-0.12	0.37	n/a	n/a	0.42	0.40	-0.02	1.69	1.89	+0.20
Ceará	1.27	1.00	-0.27	0.45	0.38	-0.07	1.04	1.03	-0.01	0.59	n/a	n/a
Rio Grande do Norte	1.55	2.42	+0.87	3.86	3.11	-0.75	0.70	0.61	-0.09	0.62	n/a	n/a
Paraíba	0.76	0.79	+0.03	0.63	0.44	-0.19	0.69	0.73	+0.04	1.66	1.44	-0.22
Pernambuco	1.04	1.31	+0.27	0.28	0.22	-0.06	0.82	0.83	+0.01	1.29	1.14	-0.15
Alagoas	0.51	0.57	+0.06	0.28	n/a	n/a	1.32	0.92	-0.40	1.21	n/a	n/a
Sergipe	0.59	0.93	+0.34	3.03	1.58	-1.45	0.63	0.71	+0.08	1.67	1.66	-0.01
Bahia	1.32	1.60	+0.28	1.43	1.35	-0.08	0.58	0.62	+0.04	0.81	n/a	n/a
Minas Gerais	1.32	1.24	-0.08	2.30	2.88	+0.58	1.00	1.04	+0.04	0.98	n/a	n/a
Espírito Santo	0.62	n/a	n/a	3.16	2.52	-0.64	0.81	0.85	+0.04	0.67	n/a	n/a
Rio de Janeiro	0.11	n/a	n/a	2.12	1.79	-0.33	0.57	0.51	-0.06	1.07	1.27	+0.20
São Paulo	1.10	0.88	-0.22	0.31	0.26	-0.05	1.16	1.14	-0.02	0.62	0.75	+0.13
Paraná	1.11	1.02	-0.09	0.45	n/a	n/a	1.34	1.40	+0.06	1.39	1.16	-0.23
Santa Catarina	0.74	0.69	-0.05	0.83	n/a	n/a	1.81	1.93	+0.12	1.40	1.25	-0.15
Rio Grande do Sul	0.69	0.78	+0.09	0.52	n/a	n/a	1.40	1.47	+0.07	1.34	1.42	+0.08
Mato Grosso do Sul	2.76	2.53	-0.23	0.78	0.95	+0.17	0.85	1.03	+0.18	n/a	n/a	n/a
Mato Grosso	2.70	4.16	+1.46	0.82	1.16	+0.34	0.93	0.86	-0.07	1.57	2.17	+0.60
Goiás	1.08	1.37	+0.29	0.87	n/a	n/a	0.93	1.07	+0.14	0.88	n/a	n/a
Distrito Federal	0.16	0.11	-0.05	0.10	n/a	n/a	0.17	0.14	-0.03	n/a	0.74	n/a

〈표 1 계속〉

	상하수도업, 폐기물관리업			건설업			도소매업			교통, 운송업		
	LQ 09	LQ 18	+ -	LQ 09	LQ 18	+ -	LQ 09	LQ 18	+ -	LQ 09	LQ 18	+ -
Rondônia	0.51	0.66	+0.15	1.78	0.62	-1.16	1.16	1.23	+0.07	0.65	0.79	+0.14
Acre	0.62	1.13	+0.51	1.31	n/a	n/a	0.90	0.98	+0.08	0.38	n/a	n/a
Amazonas	0.94	0.80	-0.14	0.99	0.82	-0.17	0.73	0.80	+0.07	1.00	1.09	+0.09
Roraima	n/a	n/a	n/a	1.18	n/a	n/a	0.80	n/a	n/a	0.34	n/a	n/a
Pará	n/a	0.77	n/a	1.21	1.33	+0.12	0.94	0.93	-0.01	0.77	0.78	+0.01
Amapá	0.97	n/a	n/a	0.81	1.01	+0.20	0.91	n/a	n/a	0.62	0.50	-0.12
Tocantins	0.89	0.95	+0.06	0.81	0.94	+0.13	0.95	0.91	-0.04	0.48	0.57	+0.09
Maranhão	1.11	0.99	-0.12	1.38	1.13	-0.25	0.98	0.98	0.00	0.74	0.75	+0.01
Piauí	0.87	0.88	+0.01	1.40	0.99	-0.41	0.99	0.98	-0.01	0.51	0.48	-0.03
Ceará	1.02	0.81	-0.21	0.91	1.17	+0.26	0.87	0.86	-0.01	0.60	0.64	+0.04
Rio Grande do Norte	1.11	1.16	+0.05	1.11	1.06	-0.05	0.91	0.95	+0.04	0.54	0.51	-0.03
Paraíba	1.80	0.94	-0.86	0.89	0.99	+0.10	0.79	0.83	+0.04	0.41	0.39	-0.02
Pernambuco	1.25	1.08	-0.17	1.25	1.00	-0.25	0.90	0.94	+0.04	0.73	0.82	+0.09
Alagoas	0.92	0.86	-0.06	1.03	0.93	-0.10	0.80	0.90	+0.10	0.53	0.54	+0.01
Sergipe	1.97	2.51	+0.54	1.28	1.08	-0.20	0.82	0.83	+0.01	0.59	0.62	+0.03
Bahia	0.93	1.22	+0.29	1.23	1.15	-0.08	0.99	0.97	-0.02	0.96	0.87	-0.09
Minas Gerais	0.97	0.99	+0.02	1.13	1.26	+0.13	1.04	1.03	-0.01	1.01	1.01	0.00
Espírito Santo	1.26	1.27	+0.01	1.03	1.06	+0.03	1.10	1.11	+0.01	1.39	1.45	+0.06
Rio de Janeiro	1.56	1.36	-0.20	1.08	0.93	-0.15	0.95	1.02	+0.07	1.23	1.24	+0.01
São Paulo	0.90	0.97	+0.07	0.91	0.92	+0.01	1.00	1.01	+0.01	1.13	1.13	0.00
Paraná	0.73	0.83	+0.10	0.82	0.94	+0.12	1.15	1.09	-0.06	1.05	1.13	+0.08
Santa	0.89	0.88	-0.01	0.76	0.98	+0.22	1.04	1.02	-0.02	0.99	1.02	+0.03

Catarina												
Rio Grande do Sul	0.83	0.80	-0.03	0.77	0.93	+0.16	1.12	1.08	-0.04	1.08	1.05	-0.03
Mato Grosso do Sul	0.52	0.96	+0.44	0.91	0.83	-0.08	1.08	1.06	-0.02	0.87	0.99	+0.12
Mato Grosso	0.38	0.62	+0.25	0.91	0.98	+0.07	1.29	1.31	+0.02	0.93	0.99	+0.06
Goiás	1.35	1.36	+0.01	1.01	0.98	-0.03	1.07	1.03	-0.04	0.84	0.82	-0.02
Distrito Federal	0.96	0.74	-0.22	1.13	0.83	-0.30	0.74	0.64	-0.10	0.76	0.77	+0.01

<표 1 계속>

	숙박업, 외식업			통신업			금융 보험업			부동산업		
	LQ 09	LQ 18	+ -	LQ 09	LQ 18	+ -	LQ 09	LQ 18	+ -	LQ 09	LQ 18	+ -
Rondônia	0.64	0.74	+0.10	0.42	0.49	+0.07	0.51	0.79	+0.28	0.39	0.53	+0.14
Acre	0.57	0.62	+0.05	0.36	0.40	+0.04	0.53	0.46	-0.07	0.52	n/a	n/a
Amazonas	0.78	0.71	-0.07	0.47	0.48	+0.01	0.50	0.41	-0.09	0.33	0.37	+0.04
Roraima	0.65	0.70	+0.05	0.38	0.48	+0.10	0.39	0.37	-0.02	0.29	0.34	+0.05
Pará	0.61	0.55	-0.06	0.43	0.54	+0.11	0.69	0.67	-0.02	0.58	0.72	+0.14
Amapá	0.61	0.53	-0.08	0.32	0.42	+0.10	0.58	0.36	-0.22	0.19	n/a	n/a
Tocantins	0.53	0.63	+0.10	0.27	0.42	+0.15	0.47	0.50	+0.03	0.56	0.71	+0.15
Maranhão	0.58	0.61	+0.03	0.36	0.46	+0.10	0.59	0.54	-0.05	0.43	0.83	+0.40
Piauí	0.52	0.76	+0.24	0.34	0.45	+0.11	0.64	0.52	-0.12	0.47	0.67	+0.20
Ceará	0.76	0.86	+0.10	0.48	0.82	+0.34	0.68	0.70	+0.02	0.77	1.18	+0.41
Rio Grande do Norte	1.02	1.02	0.00	0.50	0.54	+0.04	0.56	0.51	-0.05	0.98	1.05	+0.07
Paraíba	0.58	0.73	+0.15	0.50	0.60	+0.10	1.00	0.58	-0.42	0.59	0.62	+0.03
Pernambuco	0.87	0.98	+0.11	0.63	0.67	+0.04	0.73	0.59	-0.14	0.65	0.77	+0.12
Alagoas	0.83	1.10	+0.27	0.37	0.48	+0.11	0.51	0.50	-0.01	0.68	1.33	+0.65
Sergipe	0.79	0.86	+0.07	0.47	0.47	0.00	0.66	0.68	+0.02	0.40	1.13	+0.73
Bahia	1.00	1.01	+0.01	0.50	0.51	+0.01	0.63	0.58	-0.05	0.77	0.71	-0.06
Minas Gerais	0.95	0.91	-0.04	0.74	0.78	+0.04	1.04	0.79	-0.25	0.81	0.86	+0.05
Espírito Santo	1.02	0.95	-0.07	0.68	0.74	+0.06	0.84	0.85	+0.01	0.73	0.99	+0.26
Rio de Janeiro	1.36	1.39	+0.03	1.41	1.29	-0.12	1.21	1.13	-0.08	1.25	1.24	-0.01
São Paulo	1.10	1.11	+0.01	1.45	1.39	-0.06	1.27	1.42	+0.15	1.25	1.18	-0.07
Paraná	0.96	0.94	-0.02	0.92	1.01	+0.09	0.82	0.97	+0.15	1.12	0.87	-0.25
Santa Catarina	1.05	1.02	-0.03	0.91	1.02	+0.11	0.73	0.79	+0.06	1.09	0.88	-0.21
Rio Grande do Sul	0.92	0.89	-0.03	0.93	0.96	+0.03	1.00	1.02	+0.02	1.16	1.12	-0.04
Mato Grosso do Sul	0.81	0.86	+0.05	0.68	0.75	+0.07	0.71	0.69	-0.02	0.64	0.73	+0.09
Mato Grosso	0.85	0.88	+0.03	0.65	0.67	+0.02	0.73	0.76	+0.03	0.51	0.74	+0.23
Goiás	0.85	0.95	+0.10	0.62	0.66	+0.04	0.66	0.71	+0.05	0.80	0.89	+0.09
Distrito Federal	1.07	1.01	-0.06	1.58	1.62	+0.04	1.75	1.92	+0.17	1.16	1.27	+0.11

<Table 3 Continues>

	과학, 기술산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교육 서비스업		
	LQ 09	LQ 18	+ -	LQ 09	LQ 18	+ -	LQ 09	LQ 18	+ -	LQ 09	LQ 18	+ -
Rondônia	0.61	0.79	+0.18	0.49	0.51	+0.02	1.99	2.02	+0.03	0.48	0.57	+0.09
Acre	0.47	0.71	+0.24	0.69	1.01	+0.32	1.93	1.66	-0.27	2.55	2.16	-0.39
Amazonas	0.55	0.69	+0.14	1.06	0.89	-0.17	1.47	1.35	-0.12	1.61	1.60	-0.01
Roraima	0.50	0.46	-0.04	0.72	0.68	-0.04	3.10	3.03	-0.07	0.67	0.68	+0.01

Pará	0.65	0.67	+0.02	0.63	0.72	+0.09	1.84	1.77	-0.07	1.30	1.27	-0.03
Amapá	0.36	0.49	+0.13	0.80	0.72	-0.08	2.65	2.87	+0.22	1.01	0.78	-0.23
Tocantins	0.57	0.68	+0.11	0.26	0.47	+0.21	2.36	1.85	-0.51	2.52	1.92	-0.60
Maranhão	0.46	0.48	+0.02	0.59	0.67	+0.08	2.01	2.01	0.00	1.43	1.19	-0.24
Piauí	0.59	0.61	+0.02	0.67	0.92	+0.25	1.71	1.52	-0.19	2.26	1.88	-0.38
Ceará	0.61	0.60	-0.01	0.94	1.07	+0.13	1.45	1.27	-0.18	1.24	1.15	-0.09
Rio Grande do Norte	0.59	0.65	+0.06	0.73	0.95	+0.22	1.84	1.84	0.00	0.80	0.81	+0.01
Paraíba	0.41	0.55	+0.14	0.58	0.68	+0.10	2.44	2.05	-0.39	0.92	0.93	+0.01
Pernambuco	0.85	1.18	+0.33	1.20	1.07	-0.13	1.50	1.10	-0.40	0.72	1.07	+0.35
Alagoas	0.45	0.51	+0.06	0.53	0.80	+0.27	1.80	1.67	-0.13	0.68	1.15	+0.47
Sergipe	0.59	0.66	+0.07	0.78	1.01	+0.23	1.69	1.26	-0.43	1.80	1.35	-0.45
Bahia	0.81	0.85	+0.04	0.99	0.98	-0.01	1.47	1.39	-0.08	1.11	1.10	-0.01
Minas Gerais	1.08	0.95	-0.13	0.85	0.79	-0.06	0.87	0.95	-0.08	1.30	1.26	-0.04
Espírito Santo	0.85	0.90	+0.05	0.98	0.87	-0.11	1.06	1.16	+0.10	0.56	0.55	-0.01
Rio de Janeiro	1.40	1.26	-0.14	1.40	1.16	-0.24	0.86	0.92	+0.06	1.23	1.11	-0.12
São Paulo	1.24	1.27	+0.03	1.26	1.31	+0.05	0.68	0.63	-0.05	0.59	0.74	+0.15
Paraná	0.94	0.93	-0.01	0.71	0.78	+0.07	0.63	0.74	+0.11	1.20	1.13	-0.07
Santa Catarina	0.86	0.93	+0.07	0.76	0.81	+0.05	0.57	0.62	+0.05	0.83	0.70	-0.13
Rio Grande do Sul	0.88	0.85	-0.03	0.74	0.72	-0.02	0.63	0.76	+0.13	1.11	0.98	-0.13
Mato Grosso do Sul	0.70	0.80	+0.10	0.66	0.62	-0.04	1.50	1.17	-0.33	1.53	0.94	-0.59
Mato Grosso	0.81	0.82	+0.01	0.55	0.63	+0.08	1.06	1.04	-0.02	1.06	0.99	-0.07
Goiás	0.64	0.82	+0.18	0.86	0.88	+0.02	1.17	0.94	-0.23	1.34	1.39	+0.05
Distrito Federal	0.97	0.96	-0.01	1.14	1.13	-0.01	1.94	2.06	+0.12	1.32	1.02	-0.30

<Table 3 Continues>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 문화, 스포츠 여가업			기타 서비스업			국제기관 초국가기구		
	LQ 09	LQ 18	+ -	LQ 09	LQ 18	+ -	LQ 09	LQ 18	+ -	LQ 09	LQ 18	+ -
Rondônia	0.48	0.68	+0.20	0.33	0.42	+0.09	0.68	0.81	+0.13	n/a	n/a	n/a
Acre	0.92	1.23	+0.31	1.23	0.64	-0.59	0.70	0.72	+0.02	n/a	n/a	n/a
Amazonas	0.57	1.18	+0.61	0.60	0.49	-0.11	0.88	0.67	-0.21	0.41	0.32	-0.09
Roraima	0.29	0.52	+0.23	0.53	0.65	+0.12	0.49	0.70	+0.21	n/a	n/a	n/a
Pará	0.86	0.92	+0.06	0.75	0.78	+0.03	0.83	0.74	-0.09	n/a	n/a	n/a
Amapá	0.44	0.85	+0.41	0.35	0.38	+0.03	1.02	0.64	-0.38	n/a	n/a	n/a
Tocantins	0.49	1.40	+0.91	0.31	0.28	-0.03	0.55	0.62	+0.07	n/a	n/a	n/a
Maranhão	0.81	1.23	+0.42	0.44	0.41	-0.03	1.26	0.93	-0.33	n/a	n/a	n/a
Piauí	0.91	1.38	+0.47	0.47	n/a	n/a	1.19	1.06	-0.13	n/a	n/a	n/a
Ceará	0.80	0.93	+0.13	0.65	0.86	+0.21	1.24	1.34	+0.10	n/a	n/a	n/a
Rio Grande do Norte	0.90	0.59	-0.31	0.70	n/a	n/a	0.82	0.86	+0.04	n/a	n/a	n/a
Paraíba	0.57	1.24	+0.67	0.59	0.60	+0.01	0.68	0.83	-0.15	n/a	n/a	n/a
Pernambuco	0.85	1.47	+0.62	0.72	0.81	+0.09	0.88	0.96	+0.08	0.20	0.29	+0.09
Alagoas	0.79	0.89	+0.10	0.43	0.51	+0.08	0.97	1.00	+0.03	n/a	n/a	n/a
Sergipe	0.99	1.62	+0.63	0.63	0.73	+0.10	0.82	0.76	-0.06	n/a	n/a	n/a
Bahia	1.00	1.15	+0.15	0.77	0.67	-0.10	0.95	0.91	-0.04	0.07	n/a	n/a
Minas Gerais	0.99	0.87	-0.12	1.06	n/a	n/a	0.93	0.99	+0.06	0.10	n/a	n/a
Espírito Santo	0.96	1.05	+0.09	0.71	n/a	n/a	1.07	1.01	-0.06	n/a	n/a	n/a
Rio de Janeiro	1.20	1.18	-0.02	1.70	1.98	+0.28	1.24	1.27	+0.03	1.23	n/a	n/a

São Paulo	1.14	1.02	-0.12	1.09	1.11	+0.02	0.98	1.02	+0.04	0.81	0.82	+0.01
Paraná	0.93	0.71	-0.22	0.99	0.90	-0.09	1.15	1.07	-0.08	0.15	n/a	n/a
Santa Catarina	0.61	0.59	-0.02	0.94	0.77	-0.17	0.83	0.82	-0.01	0.06	n/a	n/a
Rio Grande do Sul	1.20	0.97	-0.23	1.04	0.91	-0.13	0.90	0.85	-0.05	0.39	n/a	n/a
Mato Grosso do Sul	0.99	1.15	+0.16	0.69	0.60	-0.09	1.18	1.06	-0.12	n/a	n/a	n/a
Mato Grosso	0.71	0.64	-0.07	0.46	0.41	-0.05	1.04	1.08	+0.04	n/a	n/a	n/a
Goiás	0.87	1.03	+0.16	0.76	0.81	+0.05	0.99	0.95	-0.04	n/a	n/a	n/a
Distrito Federal	0.90	1.14	+0.24	1.29	1.26	-0.03	1.21	1.11	-0.10	n/a	n/a	n/a

2. 산업특화도 도출

표 2. 브라질 각 주별 특화산업

지역	주	특화산업 I (LQ18>1, change in LQ≥0)	특화산업 II (LQ18>1, change in LQ <0)
North	Rondônia	Electricity and Gas/ Wholesale and Retail Trade/ Public Administration, Defense, Social Security	-
	Acre	Water Supply, Sewage, Waste Management/ Business Support Services/ Human Health and Social Work Activities	Public Administration, Defense, Social Security/ Education
	Amazonas	Transportation and Storage/ Human Health and Social Work Activities	Manufacturing/ Electricity and Gas/ Public Administration, Defense, Social Security/ Education
	Roraima	Electricity and Gas	Public Administration, Defense, Social Security
	Pará	Agriculture, Forestry, Fisheries/ Mining and Quarrying/ Construction	Public Administration, Defense, Social Security/ Education
	Amapá	Construction/ Public Administration, Defense, Social Security	Electricity and Gas
	Tocantins	Agriculture, Forestry, Fisheries/ Electricity and Gas/ Human Health and Social Work Activities	Public Administration, Defense, Social Security/ Education
Northeast	Maranhão	Public Administration, Defense, Social Security/ Human Health and Social Work Activities	Agriculture, Forestry, Fisheries/ Construction/ Education
	Piauí	Electricity and Gas/ Human Health and Social Work Activities	Public Administration, Defense, Social Security/ Education
	Ceará	Construction/ Real Estate Activities/ Business Support Services/ Membership Organizations, Repair and Other Personal Services	Agriculture, Forestry, Fisheries/ Manufacturing/ Public Administration, Defense, Social Security/ Education
	Rio Grande do Norte	Agriculture, Forestry, Fisheries/ Water Supply, Sewage, Waste Management/ 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 Public Administration, Defense, Social Security	Mining and Quarrying/ Construction
	Paraíba	Human Health and Social Work Activities	Electricity and Gas/ Public Administration, Defense, Social Security
	Pernambuco	Agriculture, Forestry, Fisheries/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Activities/ Education/ Human Health and Social Work Activities	Electricity and Gas/ Water Supply, Sewage, Waste Management/ Construction, Business Support Services, Public Administration, Defense, Social Security/ Education
	Alagoas	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 Real Estate Activities/ Education/ Membership Organizations, Repair	Public Administration, Defense, Social Security

		and Other Personal Services	
	Sergipe	Water Supply, Sewage, Waste Management/ Real Estate Activities/ Business Support Services/ Human Health and Social Work Activities	Mining and Quarrying/ Electricity and Gas/ Construction/ Public Administration, Defense, Social Security/ Education
	Bahia	Agriculture, Forestry, Fisheries/ Water Supply, Sewage, Waste Management/ 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 Human Health and Social Work Activities	Mining and Quarrying/ Construction/ Public Administration, Defense, Social Security/ Education
Southeast	Minas Gerais	Mining and Quarrying/ Manufacturing/ Construction/ Transportation and Storage/	Agriculture, Forestry, Fisheries/ Wholesale and Retail Trade
	Espírito Santo	Water Supply, Sewage, Waste Management/ Construction/ Wholesale and Retail Trade/ Transportation and Storage/ Public Administration, Defense, Social Security/ Human Health and Social Work Activities	Mining and Quarrying/ Membership Organizations, Repair and Other Personal Services
	Rio de Janeiro	Electricity and Gas/ Wholesale and Retail Trade/ Transportation and Storage/ 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 Arts, Sports and Recreation related Services/ Membership Organizations, Repair and Other Personal Services	Mining and Quarrying/ Water Supply, Sewage, Waste Managemen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Financial and Insurance Activities/ Real Estate Activities/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Activities/ Business Support Services/ Education/ Human Health and Social Work Activities
	São Paulo	Wholesale and Retail Trade/ Transportation and Storage/ 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 Financial and Insurance Activities/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Activities/ Business Support Services/ Arts, Sports and Recreation related Services/ Membership Organizations, Repair and Other Personal Services	Manufactur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Real Estate Activities/ Human Health and Social Work Activities
South	Paraná	Manufacturing/ Transportation and Storag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griculture, Forestry, Fisheries/ Electricity and Gas/ Wholesale and Retail Trade/ Education/ Membership Organizations, Repair and Other Personal Services
	Santa Catarina	Manufacturing/ Transportation and Storag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lectricity and Gas/ Wholesale and Retail Trade/ 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
	Rio Grande do Sul	Manufacturing/ Electricity and Gas/ Financial and Insurance Activities	Wholesale and Retail Trade/ Transportation and Storage/ Real Estate Activities
Central-West	Mato Grosso do Sul	Manufacturing/ Human Health and Social Work Activities	Agriculture, Forestry, Fisheries/ Wholesale and Retail Trade/ Public Administration, Defense, Social Security/ Membership Organizations, Repair and Other Personal Services
	Mato Grosso	Agriculture, Forestry, Fisheries/ Mining and Quarrying/ Electricity and Gas/ Wholesale and Retail Trade/ Membership Organizations, Repair and Other Personal Services	Public Administration, Defense, Social Security
	Goiás	Agriculture, Forestry, Fisheries/ Manufacturing/ Water Supply, Sewage, Waste Management/ Education/ Human Health and Social Work Activities	Wholesale and Retail Trade
Federal District	Distrito Federa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Financial and Insurance Activities/ Real Estate Activities/ Public Administration, Defense, Social Security/ Human Health and Social Work Activities	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 / Business Support Services/ Education/ Arts, Sports and Recreation related Services/ Membership Organizations, Repair and Other Personal Services

I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에서는 우리기업의 효율적인 브라질 지역시장 진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브라질지리통계청(IBGE)의 ‘Cadastro Central de Empresas’ 통계자료 중 2009년, 2018년 산업종사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브라질표준산업코드인 CNAE 2.0의 산업별 대분류를 적용하여 입지계수 분석을 통한 각 주별 특화산업 도출이 진행되었다. 제 3장 2절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의 일환으로 작성된 표2를 통해 특화산업 선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도출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전통적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 산업기반 및 숙련인력이 잘 갖춰져 우리기업들의 진출빈도가 높은 남부 및 남동부지역은 전체적으로 1차 산업부터 3차 산업까지 고르게 특화산업이 도출되고 있다. 고무적인 것은 지금까지 우리기업의 진출패턴이 활발하지 않았던 북부 및 북동부지역의 주에서는 주로 1, 2차 산업 및 인프라와 관련된 개발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의 브라질 경제성장에 따른 지역개발 수요에 맞춰 우리기업들이 북부 및 북동부 지역시장진출을 선점한다면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의 원활한 브라질 지역시장 진출을 추진·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의 부족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전문가 육성 및 활용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복잡한 행정체계, 관료주의, 부정부패, 조세제도, 고용 및 노무관리 측면에서 대두되는 브라질비용(Brazil Cost)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다. 전문가 활용 측면에서 가장 유용한 방안은 브라질 현지에 상주하는 한인 전문가의 활용이다. 최초 농업이민으로 브라질에 도착한 한인들은 그간 대부분이 의류업에 종사하였지만 최근 의류업의 위기로 인해 다른 산업영역으로 활동반경을 넓히고 있는데 주로 대체에너지, IT산업, 전기, 전자 등 한국이 강점을 보이는 부문으로의 진출이 활발하다(김영철 2007, 62-64). 우리 기업이 브라질 지역시장 진출 시 이러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기업인과 협력한다면 더욱더 효과적인 진출이 이루어질 공산이 크다.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큰 틀에서 본다면 시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방법론 및 내용 구성면에서 한계점이 노출된다. 우선 방법론적 측면에서 입지계수법은 2장 2절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많은 장점이 있지만, 단순히 입지계수법만 가지고 지역산업을 구조적으로 분석할 경우 계산방식의 단순성으로 인해 다소 불확실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내용 구성측면에서는 산업별로 좀 더 심도 깊고 구체적인 분석이 실행되지 않았다. 짧은 지면의 한계로 각 주별 산업특화도 분석 결과를 깊이 있는 통찰력과 정보의 부재로 인해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 점이 본고의 아쉬운 점 중 하나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인해 도출된 명확한 한계점은 향후 연구에서 보충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브라질 남부 및 남동부 지역 이외의 지역 시장 진출을 염두하고 있는 우리 기업에게는 본 연구물을 통해 성공적인 진출을 위

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 기업들의 효율적 브라질 지역시장 진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기수, 김진오, 박미숙, 고희채(2012), 브라질 경제의 부상과 한·브라질 산업협력 확대 방안, 연구보고서 11-24,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영철(2007), 기업의 브라질 진출 확대와 교민 활용방안 연구, 지역연구시리즈 07-12,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상호(2006), “전북지역성장의 구조적 분석 II(1995-2004): 입지상과 변이·할당분석”, 한국자치행정학보, 제 20권 제 1호, pp. 103-122
- 김영철(2007), 기업의 브라질 진출 확대와 교민 활용방안 연구, 지역연구시리즈 07-12,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박종화(1997), 지역경제론, 서울: 박영사
- 홍기용(1997), 지역경제론, 서울: 박영사
- 황명찬(2001), 지역개발론, 서울: 법문사
- 현대경제연구원(2005), 한국경제의 새로운 미래 BRICs, 서울: 한국경제신문
- 한국수출입은행(2008), 남미 자원부국의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 Riordan Roett(2011), 브라질 남미의 새로운 지배자(김선영 역), 서울: 민음사
- Kim, Sang Ho(2006), “A Structural Analysis of Regional Growth of Chonbuk Province By Locational Quotient and Shift-Share Analysis II(1995-2004)”,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Vol. 20, No. 1, pp. 103-122
- Riordan Roett(2011), The New Brazil. Seoul: Minumsa.
- David M. Smith(1971), Industrial Location: An Economic Geographical Analysis, New York: John Wiley & Sons
- F. P. Puga(2004), “Estrutura e Competitividade da Indústria Brasileira: O que Mudou?”, *Revista do BNDEx*, Vol. 11, No. 22, pp. 3-19
- IBGE(2009), Estatísticas do Cadastro Central de Empresas, Rio de Janeiro: IBGE.
- IBGE(2018), Estatísticas do Cadastro Central de Empresas, Rio de Janeiro: IBGE.
- J. C. Ferraz, D. Kupfer and M. Ito(2004), “Industrial Competitiveness in Brazil”, *Cepal Review*, vol. 82, pp. 91-117
- Santander (2021). Brazil: Foreign Investment. Available from: <https://santandertrade.com/en/portal/establish-overseas/brazil/foreign-investment#protection>
- IBGE(2007). Estrutura detalhada e notas explicativas da CNAE 2.0. Available from https://cnae.ibge.gov.br/images/concla/downloads/revisao2007/PropCNAE20/CNAE20_NotasExplicativas.pdf
- Ceratti, Mariana. 2012. “In Brazil, an Emergent Middle Class Takes Off.” The World Bank. Retrieved January 13, 2021. <https://www.worldbank.org/en/news/feature/2012/11/13/middle-class-in-Brazil-Latin-America-report>
- Nassif, André. 2017. “An Analysis of Brazil’s Economic Situation: 2014-2017, the Short-Term Outlook and Policy Alternatives.” *Brazilian Keynesian Review*

- 3(1): 95-108.
- Siegel, Richard. (1966). "The Economic Base and Multiplier Analysis" *Urban Affairs Review*, Vol. 2, Issue 2, pp. 24-38.
- Tiebout, C.-M. (1956). Exports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4(2), pp. 160-164.
- Hoyt, H. (1954). Homer Hoyt on development of economic base concept. *Land Economics*. 30, pp. 182-186.
- Hoyt, Homer and Arthur M. Weimer. 1948. *Principles of Urban Real Estate*. New York: The Ronald Press Company.
- Philippe Poinot, Jean-François Ruault. Economic-base theory and highly-open economies: incorporating day-to-day mobility. 2019. Available from: <https://hal.archives-ouvertes.fr/hal-02269336/document>
- Haggett, P. *Locational Analysis in Human Geography*; Edward Arnold: London, UK, 1965.
- Kotra, 2019, Brazil' s Agricultural Industry. Available from: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4/globalBbsDataView.do?setIdx=403&dataIdx=178590>

문화재의 거래에 대한 법적 쟁점

- 준거법을 중심으로 -

최재원 박사
(한국외대)

문화재의 국제거래에 관한 법적 쟁점 - 준거법과 국제적 강행규정

최재원(한국외대 EU연구소 연구원)

I. 서론

고고학적, 선사적 또는 역사적, 문학적, 예술적 및 과학적 중요성을 가지는 문화재를 국제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는 인식은 오늘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문화재를 어떻게 보호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관점은 문화재 기원국의 문화재에 대한 특별한 이해관계를 인정하여 기원국이 자국의 문화유산을 자국 영토 내에 소유하고자 하는 가치를 지지하는 국가주의(cultural nationalism)¹⁾와, 문화재가 인류 공용의 문화적 재산이라고 인식하면서 그 소유에 관하여는 기원국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문화재의 완전성 있는 보존, 문화재에 대한 적절한 접근을 더 유리하게 보장할 수 있는 국가에서 소유하고자 하는 가치를 지지하는 ‘국제주의(cultural internationalism)’가 대립한다. 유네스코(UNESCO)에서 1970년 채택한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이하 ‘유네스코협약’이라 한다)”은 위와 같은 입법주의 중 국가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이해된다.¹⁾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협회(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이하 ‘UNIDROIT’라 한다)가 1995년 채택한 “도난 및 불법반출문화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이하 ‘문화재환수협약’이라 한다)”은 유네스코 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법(私法) 규정의 보완을 위한 연구에서 출발한 협약으로서 문화재를 도난당한 개인의 도난문화재에 대한 회복(Restitution) 청구와 기원국의 불법반출 문화재에 대한 반환(Return) 요청에 관한 통일된 실질법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듯 유네스코협약과 문화재환수협약은 ‘국가주의’에 기초하여 도난 또는 불법반출된 문화재의 환수에 관하여 규율하는 상호 보충적, 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²⁾

이처럼 오늘날 문화재의 보호는 기원국의 문화재에 대한 특별한 이해관계를 긍정하는 국가주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문화재의 사적 거래에 관한 국제사법적

1) 석광현, “UNIDROIT 문화재환수협약 가입절차와 유의점”, 국제사법연구 제15권, 2009, 327.

2) 석광현, 각주 1, 331.

규율에 있어서 이른바 ‘기원국법(起源國法, *lex originis*)’³⁾은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특히 거래 대상인 문화재가 도난 또는 기원국으로부터 불법반출된 것이고 그 거래행위의 준거법 소속국과 문화재의 소재지국이 기원국과 다른 경우에는, 기원국의 문화재 거래에 관한 강행규정의 간접 내지 개입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러므로 문화재 거래는 이른바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에 적합하고, 또한 그 검토를 할 필요성이 높은 거래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문화재의 정의와 개념을 간략히 살펴보고, 문화재 거래에 관한 준거법의 일반론과 국제적 강행규정의 적용에 대해 살펴본다.

II. 문화재의 정의와 개념

1. 문화재의 정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 기념물 그리고 민속문화재로 분류된다(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

우리나라가 지난 1983년에 가입한 1970년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방지수단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이하 ‘1970년 유네스코협약’이라 한다)에서의 문화재(cultural property)란, “종교적 또는 세속적 근거에 따라 고고학적, 선사학적, 역사학적, 문학적, 예술적 또는 과학적으로 중요하며 각 구가가 특별히 지정한 재산으로 다음의 유형⁴⁾에 포함되는 재산”을 의미한다(위 협약 제1조).

또한 우리나라는 아직 가입하지 않았으나, 중국을 비롯한 47개국이 체약국인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협회(UNIDROIT)의 1995년 ‘도난 또는 불법반출된 문화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이하 ‘1995년 유니드로와협약’이라 한다)은 문화재(cultural object)를 “종교적 또는 세속적 근거에 따라 고고학적, 선사학적, 역사=학적, 문학적, 예술적 또는 과학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협약의 부속서에 열거된 범주⁵⁾에 속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위 협약

3) 송호영, “국제사법상 문화재의 기원국법주의(*lex originis*)에 관한 연구”, 재산법연구 제30권 제1호, 2013, 79

4) “진귀한 수집품”, “100년 이상의 골동품”, “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건” 등(위 협약 제1조 a내지k호 참조)

제2조).

2. 논의의 대상

물건은 여러 기준에 따라 분류되는데 그 중 하나가 용통물과 불용통물의 구분으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물건은 그 중 용통물이다. 불용통물인 문화재는 민사법상으로 양도 또는 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공법상으로는 국유의 대상일 수 있으며, 국제거래법상으로는 수출입금지의 대상⁶⁾이 된다. 우리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는 무형문화재와 민속문화재를 포함하므로 반드시 물건인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여야 하고,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화재는 인터넷을 통한 국제적 불법거래의 대상이 되는 문화재로서 그 성질상 동산에 한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어느 국가, 특히 문화재의 기원국이 특정 문화재를 불용통물로 지정하더라도 그러한 지위가 외국에서 승인되지는 않는다.⁷⁾

Ⅲ. 문화재 거래에 관한 준거법

문화재의 국제적 거래에 관한 준거법은 크게 문화재 거래행위의 준거법과 문화재에 관한 물권의 준거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문화재 거래행위의 준거법은 문화재 거래의 원인행위인 매매계약의 성립, 유효성, 효력 등의 준거법에 관한 것이고, 문화재에 관한 물권의 준거법은 문화재에 대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원소유자의 회복청구권 등의 준거법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 문화재 거래행위의 준거법

이 글에서 전제하는 문화재 거래는 ‘동산인 문화재에 대한 매매’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상거소가 있는 당사자간의 물품매매계약에 관하여 광

5) “역사적, 생물학적 유물”, “고고학적 유물”, “미술적 유물”, “서적 등 저작물”, “고가구 및 악기” 등, 손경한, “문화재환수협약의 개요와 한국의 대응방안”, 국제사법연구 제15호(2009.12.), 205-206

6) 문화재보호법 제39조(수출 등의 금지) ①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재는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문화재의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일반동산문화재 수출 등의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이하 "일반동산문화재"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7) 석광현, “국제적 불법거래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 국제사법(國際私法)과 문화재보호법의 역할 및 개선방안”, 서울대학교 法學 제56권 제3호(2015. 9.), 128

범위한 규범력을 갖추고 있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국제물품매매협약’이라 한다)”이 문화재 거래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우선 국제물품매매협약은 그 적용대상인 ‘물품’의 범주에 문화재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된다.⁸⁾ 다만 문화재의 매매가 개인용·가족용 또는 가정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비자매매의 범주에 속하거나, 사적 경매에 의한 매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물품매매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국제물품매매협약 제2조 가호, 나호 참조).⁹⁾ 이처럼 문화재 매매계약의 성립 및 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의무에 대하여는 국제물품매매협약이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문화재 거래의 원인행위인 매매계약에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가이다. 이러한 매매계약의 실질적 유효성 문제에 관하여는 국제물품매매협약이 규율하지 않는다(국제물품매매협약 제4조 가호). 그러므로 문화재 매매계약의 유효성은 국제물품매매협약이 적용되는 사건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의하여(소송의 경우) 또는 당해 중재에 적용되는 분쟁의 실체의 준거법 결정방법에 의하여(중재의 경우) 결정되는 준거법에 의하여 규율된다.¹⁰⁾

따라서 우리나라가 법정지인 경우, 문화재 매매계약의 유효성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제사법 제25조, 제26조에 의하여 결정되는 준거법이 적용된다. 해당 매매계약이 소비자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연결원칙이 적용될 것이다.¹¹⁾

2. 문화재에 관한 물권의 준거법

문화재에 관한 물권, 그중에서도 소유권의 준거법은 문화재가 도난 또는 불법반출되어 유통된 경우에 그 문화재의 소지자가 해당 문화재를 선의취득 또는 시효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진정한 소유자가 선의취득자 또는 시효취득자에 대하여 회복

8) Kröll/Mistelis/Perales Viscasillas et al.(eds.),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2nd), C.H.Beck/Hart/Nomos, 2018, Art.1 para. 37 국제물품매매협약의 적용대상인 ‘물품’은 인도 당시를 기준으로 ‘유형의 동산’인 것으로서, 문화재 또는 예술품(cultural and art objects) 역시 물품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기술한다.

9) 국제물품매매협약은 사실상 상업적 매매계약에 적용범위가 한정되고, 사적 경매도 협약 제2조 나호에서 정한 ‘경매’의 범주에 해당한다. Kröll/Mistelis/Viscasillas(eds.)(각주 8), Art.2 paras. 7, 28.

10) 석광현, 각주 7, 131. 국제물품매매협약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이처럼 협약이 규율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준거법을 ‘보충적 준거법’이라 한다.

11) 소비자계약의 경우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하지 못한다(제27조 제1항). 이 강행규정은 국내적 강행규정을 말한다. 석광현, 각주 1, 325.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요건 및 시간적 제한 등의 관점에서 주로 문제된다.¹²⁾

전통적으로 동산에 관한 물권은 소재지법(所在地法, *lex rei sitae*)에 의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고, 우리 국제사법 제19조 역시 이를 명시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문화재의 반환이 문제되었던 외국의 사례들에서도 ‘문화재를 취득하는 행위나 그 사실의 완성 당시 문화재가 소재하였던 곳’의 법을 준거법으로 삼아 판단하였다. 그러나 동산에 대한 소재지법주의는 당사자가 동산의 소재지를 자신에게 유리한 법이 적용될 수 있는 곳으로 변경함으로써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약점이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문화재의 고향 또는 유래를 연결점으로 하여 그 곳의 법을 준거법으로 삼자고 하는 이른바 ‘기원국법주의(起源國法主義, *lex originis*)’를 취하자는 견해가 제시된다.¹³⁾ 그 밖에 소재지법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문화재에 대한 절도가 발생한 곳의 법, 즉 절취지법(竊取地法, *lex furti*)을 준거법으로 하자는 견해,¹⁴⁾ 문화재에 관한 물권의 준거법을 기계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가능한 여러 준거법의 비교형량을 통해 문제가 된 문화재를 ‘보다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곳의 법’을 준거법으로 정하자는 견해¹⁵⁾ 등도 제시된다.

소재지법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기원국법 정도만이 유력하게 고려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유네스코협약과 문화재환수협약은 모두 문화재의 기원국에 특별한 지위를 인정하고 있고, 그 반사효과로서 실제로 기원국법이 도난 또는 불법반출된 문화재의 환수에 있어서 중요한 규범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원국법주의는 기원국의 개념뿐만 아니라 기원국법이 적용되는 범위, 준거법인 기원국법이 규율하는 사항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데 결정적인 약점이 있다.¹⁶⁾ 기원국법이 유의미하게 작동할 수 있는 영역은 앞서 말한 도난 또는 불법반출된 문화재의 선의취득 또는 시효취득 가능 여부, 그리고 문화재에 대한 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요건 및 시간적 제한 등에 한정된다.¹⁷⁾ 또한 소재지법의 임의적인 변경에 따른 불합리한 결과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전통적인 준거법원칙인 소재지법주의를 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의 이익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므로 문화재에 관한 물권에 대하여도 소재지법주의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¹⁸⁾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재에 관한 물권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문화재 소재지법을 따르

12) 송호영, 각주 3, 86

13) 이재경, “미술품의 국제거래상 준거법의 선택”, 국제사법연구 제14호, 2008, 253

14) 석광현, 각주 7, 136

15) 송호영, 각주 3, 313

16) 석광현, 각주 7, 136-137.

17) 석광현, 각주 7, 137.

18) 석광현, “대마도에서 훔쳐 온 고려 불상의 서산 부석사 반환을 명한 제1심판결의 평석: 국제문화재법의 제문제”, 국제사법연구 제23권 제1호, 2017, 16

되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예외적으로 법정지 또는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기원국법 중 ‘국제적 강행규정’으로서 문제된 법률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의 달성과 기원국법에 의한 문화재 보호의 실현이라는, 경우에 따라 상충할 수 있는 이익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로써 기본적으로 법적안정성을 보장하면서도 문화재보호라는 강력한 공익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IV. 문화재 거래의 국제적 강행규정

국제적 강행규정의 적용을 통해 국제적인 문화재 매매계약의 유효성을 통제하거나 문화재에 관한 물권의 준거법에 대하여 소재지법주의를 적용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문화재 보호의 취약점을 시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에 관한 논의의 전제로서 국제적 강행규정에 관한 일반론을 검토한다.

1. 국제적 강행규정의 개념과 유형

국제적 강행규정이란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해 법률관계의 준거법이 외국법이라도 그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강행규정을 말한다.¹⁹⁾ 국제적 강행규정은 사법관계를 규율하는 그 국가의 다른 실질법 규들과는 달리 그 장소적 적용범위가 독자적으로 정해지고, 이 적용범위는 법정지의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다른 국가의 법이 당해 법률관계의 준거법으로 지정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데 핵심적 특징이 있다.

공서(公序, public policy)와 국제적 강행규정은 공익의 보장 또는 상충하는 공익의 조정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²⁰⁾ 다만 ‘공서’ 개념은 공서위반이 명백한 경우에 외국법의 적용과 그 적용에 따른 법률효과를 배제, 제거함으로써 소극적으로 법정지의 공익을 보장한다는 관념에 기초하고 있는 데 비하여, ‘국제적 강행규정’ 개념은 당해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우선하여 적용됨으로써 당해 법률관계의 내용을 형성하는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작용 방식에 차이가 있다.²¹⁾

19) 석광현, “국제거래에서의 대리상의 보호-상법 제92조의2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국제사법과 국제소송(제4권), 박영사, 2007, 19; 신창섭, 국제사법(제4판), 세창출판사, 2018, 134.

20) 로마 I 규정 전문(recitals) 제37항은 “공익(public interest)에 대한 고려는 회원국의 법원에 예외적인 상황 하에서(in exceptional circumstances) 공서(public policy)와 국제적 강행규정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을 정당화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국제적 강행규정은 그 원천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준거법 소속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이고, 둘째는 ‘법정지의 국제적 강행규정’이며, 셋째는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이다.²²⁾

우선 ‘준거법 소속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은 우리 국제사법 제6조²³⁾에 의하여 그 적용이 긍정된다. 오늘날 이른바 ‘외국공법 부적용의 원칙’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바,²⁴⁾ 준거법 소속국의 국제적 강행규정 적용은 그 당연한 논리적 귀결인 것처럼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국제사법 제6조는 준거법 소속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이 당해 준거법의 일부로서 당연히 적용된다고 규정하는 대신 ‘공법적 성격 성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소극적 규정방법을 취하고 있으므로 ‘준거법 소속국의 국제적 강행규정’ 적용을 뒷받침하는 이론 구성에 관하여는 다소간의 논의가 있다.

우리 법실무상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것은 ‘법정지의 국제적 강행규정’이고 앞서 본 것처럼 문화재 거래와 관련하여 문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기원국 등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이다.

2. 법정지의 국제적 강행규정

가. 법정지의 국제적 강행규정

우리 국제사법 제7조는 ‘대한민국 법의 강행적 적용’이라는 표제 하에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종래 학설과 판례에 의해 인정되어 오던 ‘법정지의 국제적 강행규정’의 적용을 법문에 명시한 것이다.²⁵⁾

나. 국제적 강행규정의 인정 기준

1) 외국의 입법례

공익의 실현에 기여하는 강행규정 중 어떠한 것을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인정하는 기준과 범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21) 석광현, 각주 18, 24

22) 석광현, 각주 18, 23.

23) 우리 국제사법 제6조는 “이 법에 의하여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외국법의 규정은 공법적 성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24) 석광현, 각주 7, 138

25) 석광현, 각주 7, 141.

독일에서 국제적 강행규정은 엄격한 기준 하에서 인정된다.²⁶⁾ 독일에서는 어떠한 규범이 국가적이거나 경제정책적인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경우에만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보고, 계약관계에 관여하는 대립하는 당사자들의 사적 이익 조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통상의 강행규정이라고 본다.²⁷⁾ 그러므로 독일에서는 반독점법, 통화와 외국환, 무역과 금융시장의 규제에 관한 법의 규정 등이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인정되고, 근로자와 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의 규정은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약자의 지위에 있는 당사자를 보호한다는 이익도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인정되기에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근로자와 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의 규정 역시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인정된다.²⁸⁾

한편 “계약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2008년 6월 17일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의 (EC) No 593/2008 규정(ROME I)[Regulation (EC) No 593/200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ROME I)], 이하 ‘로마 I 규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은 “국제적 강행규정은 한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조직과 같은 국가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를 존중하는 것이 결정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결과, 로마 I 규정상 달리 계약에 적용되는 준거법에 관계없이, 그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규정을 말한다”고 하여 국제적 강행규정의 정의 규정을 둔다. 이러한 정의 규정은 유럽사법재판소의 1999년 *Arblade* 사건 결정²⁹⁾에서 판시된 국제적 강행규정의 개념에 기초한 것이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위 *Arblade* 사건 결정과 2013년 *Unamar* 사건 결정³⁰⁾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이 국제적 강행규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2000년 *Ingmar* 사건 결정³¹⁾에서는 대리상 보호에 관한 규정이 국제적 강행규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국내의 학설

국내에서는 강행규정을 통상의 강행규정, 보호적 강행규정, 그리고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나누어 접근하는 견해가 유력하다.³²⁾ 여기서 ‘보호적 강행규정’이란 소비자계약

26) Axel Flessner/Michael Wilderspin, “Overriding mandatory provisions”, *Encyclopedia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2017, 1332

27) 석광현, 각주 18, 20.

28) Flessner/Wilderspin, 각주 26, 1332

29) *Criminal proceedings against Jean-Claude Arblade and Arblade & Fils SARL and Bernard Leloup, Serge Leloup and Sofrage SARL*, Joined Cases C-369/96 and C-376/96 [1999] ECR I-8453

30) *United Antwerp Maritime Agencies(UNAMAR) NV v Navigation Maritime Bulgare*, Case C-184/12 [2013] OJ C 367/12.

31) *Ingmar GB Ltd v Eaton Leonard Technologies Inc*, Case C-381/98 [2000] ECR I-9325.

32) 석광현, 각주 18, 18

및 근로계약에 관한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그에 기초한 보호가 박탈되지 아니하는 객관적 준거법의 강행규정을 말한다.³³⁾ 통상의 강행규정과 보호적 강행규정은 국내적 강행규정으로 분류된다. 이 견해는 우리 국제사법상 국제적 강행규정은 ① 원칙적으로 초개인적인 국가적, 경제정책적인 공적 이익에 봉사하는 규정들인 이른바 ‘간섭규범(*Eingriffsnorm*)’만이 이에 해당하고, ② 예외적으로 계약당사자들 간의 전형적인 불균형상태의 조정, 즉 약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규정들인 이른바 ‘특별사법(*Sonderprivatrecht*)’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³⁴⁾ 이는 국제적 강행규정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는 독일법의 접근방식에 가깝다. 이에 따를 때 소비자 또는 근로자의 보호와 관련된 강행규정은, 당해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관계없이 이를 적용되게 하려는 입법자의 의도가 명백히 표시되지 않는 한, 그것이 ‘보호적 강행규정’으로서 작용할 수 있음과는 별개로, 국제적 강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³⁵⁾

3) 국내의 판결례

우리 법원에서 국제적 강행규정의 인정 기준에 대하여 명확히 판시한 판례는 아직까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은 “국제사법 제27조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준거법 지정과 관련하여 소비자계약에 관한 강행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는 점이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의 입법목적은 고려하면,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체결된 모든 계약에 관하여 당연히 약관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³⁶⁾ 이러한 판시는 국제사법 제27조에서 정하는 ‘소비자계약에 관한 강행규정’과 국제적 강행규정이 다른 층위의 강행규정이라는, 위 국내의 유력설과 같은 인식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적지 않아 보인다. 다만 위 판결이 국제적 강행규정의 인정 기준에 관한 법리를 분명히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법원에서 채택한 기준이 어떤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다수의 하급심 판결에서 “외국법이 준거법인 경우에도 적용하여야 할 우리법의 강행규정이란, 국제사법 제7조 자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입법 목적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는 그 법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법체계와 사회질서 및 거래안전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강제적으

33) 석광현, 각주 18, 18

34) 석광현, 각주 18, 30.

35) 석광현, “경제법의 국제적 적용범위: 국제거래에서 소비자보호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역외적용을 중심으로”, 국제사법과 국제소송(제5권), 박영사, 2012, 199. 석광현 교수는 보호적 강행규정의 예로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약관법을 든다.

36)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18846, 118853 판결도 같은 판시를 하였다.

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법규정 자체에서 준거법과 관계없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거나 혹은 자신의 국제적 또는 영토적 적용범위를 스스로 규율하고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는 법리를 판시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³⁷⁾ 이러한 판시는 국제사법 제7조의 “입법목적에 비추어”라는 문언에 출발점을 둔 것으로서 그 타당성을 수긍할 수 있다. 다만 ‘그 법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법체계와 사회질서 및 거래안전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국제적 강행규정에 포함될 수 있는 규정의 본질이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판시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V. 문화재 거래와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

1. 문화재환수협약상 기원국법의 지위

문화재환수협약은 체약국인 문화재의 기원국의 문화재보호법을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서 존중할 의무를 부과한다고 설명된다.³⁸⁾ 이러한 점에서 협약은 널리 적용되는 국제조약으로서 처음으로 강행적인 외국공법규정의 적용을 의무화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³⁹⁾ 예컨대 문화재환수협약 제1조 (b)호는 “문화적 유산 보호를 위해 문화재의 반출을 규제하는 체약국의 법에 위반하여 그 영역으로부터 반출된 문화재(이하 ‘불법 반출 문화재’라 함)의 반환”에 대하여 협약이 적용됨을 명시한다. 또한 제3조 제2항은 “이 협약상 위법하게 발굴되었거나 적법하게 발굴되었어도 위법하게 보유된 문화재는, 발굴이 이루어진 국가의 법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도난당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제5조 제2항은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반출을 규제하는 요청국의 법에 따라 발급된 허가에 의해 전시, 연구 내지 복원 등의 목적으로 요청국의 영역에서 일시적으로 반출되었으나 그 허가의 조건에 따라 반환되지 않은 문화재는 불법반출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한다. 즉 문화재가 도난문화재인지 여부나 문화재 반출의 위법성은 기원국의 법에 의하여 판단된다. 이처럼 문화재환수협약이 기원국법의 지위를 고양시키고 이를 강행적으로 적용케 하는 것은 문화재환수협약의 체약국이 아닌 우리 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37) 서울고등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나16900 판결(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3. 선고 2012가합10763 판결(확정), 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1. 선고 2018나63343 판결(상고기각 확정)

38) 석광현, 각주 7, 150.

39) 석광현, 각주 1, 333.

2. 문화재보호에 관한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에 대한 적용 가능성

가. 일반적 검토

앞서 본 것처럼 문화재보호에 관한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은 그 적용이 허용될 여지가 높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오늘날 문화재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인식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고, 문화재의 보호에 관하여 ‘국가주의’에 입각한 국제협약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강한 공익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문화재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거래의 안전이나 예측가능성의 보장보다 문화재의 환수를 뒷받침하는 공익의 보장이 더 중요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 이러한 이익관계가 일반보편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와 같은 법익의 우위는 적지 않은 경우에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특히 기원국법의 경우에는 문화재환수협약을 통해서 그 강행적 적용이 특별한 지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 거래와 관련한 국제적 강행규정 적용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에서 당해 법률관계와 밀접한 관련성을 긍정할 수 있다.

문화재보호와 관련하여 기원국법 외의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가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스위스의 문화재양도법(LTBC) 제16조는 문화재의 매매계약이 스위스에서 체결하거나 그 소유권이전이 스위스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그 거래에 관여한 거래업자와 경매업자에 대하여 그 주소 또는 본거가 스위스에 있는지를 불문하고, 또는 매매계약의 준거법을 불문하고 일정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국제적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⁴⁰⁾ 이집트에서 기원한 문화재가 스위스에서 매매되었는데, 그 현재 소재지가 우리나라여서 우리나라에서 그 회복에 관한 소가 계속된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러한 경우라면 스위스 문화재양도법 제16조의 주의의무 규정을 적용을 긍정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화재 매매계약이 스위스 외의 장소에서 체결된 경우라면 스위스 문화재양도법과 당해 법률관계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들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1) 문화재의 개념과 범위

문화재라 함은 법으로 보호를 받거나 받아야 하는 나라의 문화적 유물이라는 것이

40) 이종혁, “스위스의 문화재양도법(LTBC)-주요내용과 국제사법적 함의를 중심으로-”, 국제사법연구 제 23권 제1호, 2017, 80

사전적 뜻풀이다. 그런데 법으로 보호하거나 보호할 문화에 관한 소산(유물)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 입법형성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⁴¹⁾ 문화재의 개념과 범위를 정하는 방식은 각 나라마다 상이하고, 심지어 국제적인 협약에서도 보호대상인 문화재의 정의가 다르다. 만약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물건이 문화재로 취급되지 않으나 기원국에서는 문화재로 취급되어 그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는 경우, 문화재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기원국의 법률은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포섭될 수 있을 것이다.

2) 문화재의 선의취득과 시효취득

문화재보호법 제87조 제5항은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遺失物)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재, 그 출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재의 거래행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을 규정한다. 즉 문화재보호법은 지정문화재와 그 밖에 일정한 문화재에 대하여는 문화재의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다.⁴²⁾ 이는 불법문화재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2007년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을 통하여 신설된 조항이다. 다만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이 이미 충분히 강하게 문화재의 선의취득을 금하고 있는바, 법정지의 국제적 강행규정으로서 적용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에 의존할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우리 법은 문화재의 시효취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도난 문화재의 양수인이 시효취득을 하는 경우 시효취득자에 대한 반환청구는 국내법상 불가능하다.⁴³⁾ 이에 대하여는 만약 기원국법에 문화재의 시효취득을 금지하는 법률조항이 있다면 그 법률조항이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적용될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시효취득의 경우에는 선의취득에 비하여 시효취득자의 신뢰와 사회적 거래안전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더 높다는 점에서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의 적용에는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VI. 결론

문화재 거래의 준거법은 거래행위 자체의 준거법과 문화재에 관한 물권의 준거법으로 나누어 검토하여야 한다. 그중 특히 문화재에 관한 물권의 준거법으로서는 소재지법주의 대신 기원국법주의를 채택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게 제시된다. 그러나

41)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8헌바67 결정

42) 이순옥, “문화재 환수와 관련된 형사법상 압수 및 몰수”, 국제사법연구 제24권 제2호, 2018, 406.

43) 김천수, “도난문화재의 회복-회복의 요건과 절차-”, 국제사법연구 제15권, 2009, 242.

소재지법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고, 기원국법에 의해 부여되는 문화재에 대한 보호는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의 적용이라는 맥락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 국제사법상 제3국이 당해 법률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그 국가의 국제적 강행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그 국가의 공익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경우에는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특히 문화재 보호와 관련한 제3국, 그 중에서도 특히 문화재 기원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은 그 적용을 허용할 수 있는 여지가 더 크다.

중앙아시아 방산산업의 현황

- 아제르바이잔과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

양우진 박사
(한국외대)

중앙아시아 방위산업 현황 :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을 중심으로

양우진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은 중앙아시아지역¹⁾에서 가장 가파른 경제성장을 이룩한 주요 신흥국으로 인식되고 있다²⁾. 그러나, 무엇보다도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이 역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갖는 가장 큰 차이점은, 그들의 경제성장과 군사력 건설이 방위산업화로 이어졌다는데 있다³⁾. 특히, 두 국가의 방위산업화는 최근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현재 두 국가의 방산기업은 항공, 지상, 보병화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평균 4%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⁴⁾, 제한적인 범주에서는 독자적 모델을 개발⁵⁾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일국의 산업화와 군사력 건설은 방위산업화를 추구하게 되는 강한 동기를 제공해주지만, 이러한 점이 반드시 방위산업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생산과 소비의 측면에서, 방산 후발국의 산업적 생산기반은 불안정한 요소가 다수 발견되며, 최종 생산품의 품질과 성능 또한, 모험적 요소가 다수 발견된다.

- 1) 좁은 의미의 중앙아시아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5개국을 지칭하나, 넓은 의미에서 중앙아시아지역은 중앙 유라시아 지역에 걸친 투르크 정체성을 지닌 국가들을 의미하며, 터키와 아제르바이잔이 포함된다.
- 2) 월드뱅크(World bank)에 따르면, 1993년부터 2019년까지 카자흐스탄의 GDP는 7.8배 증가했으며(234억 달러→1,817억 달러), 아제르바이잔의 GDP는 12배(3.7억달러→480.5억달러) 증가했다. 또한,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의 GDP대비 방위예산비율은 각각 1%, 4%를 유지하고 있으나, 양적 측면에서, 카자흐스탄은 약 12배(3.9억달러→19억달러), 아제르바이잔은 약 9배(2억달러→18억달러) 증가했다. 양국의 군사력 규모가 약 6만여 명 규모로 꾸준히 유지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기획득비용, 즉, 방산시장이 매우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Worldbank Database,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1949-2020).
- 3) 중앙아시아에서 우즈베키스탄이나, 카프카스 지역에서 조지아 또한 방위산업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들의 제한적 산업력으로 말미암아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 조지아의 경우 1996년부터 2019년까지 방위예산은 약 3배(102억 달러→312억 달러),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약 8배 (1.7억 달러→14.4억 달러) 증가했으나, 여전히 예산 총량은 카자흐스탄(19억달러), 아제르바이잔(18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하며, 생산품목에서도 크게 열세를 보이고 있다.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macrorends.net을 참고할 것.)
- 4) ResearchAndMarkets, 『Future of the Kazakh Defense Industry 2018-2023: Market Attractiveness, Competitive Landscape & Forecasts』, (Online Publisher: GlobalData, 2018) ; “Volume growth of defense industry production in Kazakhstan is 4 pct”, AzeriNews by Abdul Kerimkhanov, 14 February 2019, (URL: <https://www.azerinews.az/region/145682.html>, 검색일: 2021.6.10.)
- 5) Mark Eaton, “Major trends in military expenditure and arms acquisitions by the states of the Caspian region”, in Gennady Chufirin, 『THE SECURITY OF THE CASPIAN SEA REGION』,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즉, 선진국의 검증된 무기체계를 저렴하게 도입하는 것은 비용적 측면으로나, 군사 작전적 측면에서나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현재까지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의 무기획득은 대부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고, 서방과의 교류 확대로 다양한 다변적 무기획득경로가 확보되었다⁶⁾. 즉,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은 일반적으로 방산 후발국이 경험하는 ‘무기금수조치(Arms embargo)’에 강한 영향을 받고있지 않으며, 최근의 경제성장과 대외적 상황을 고려하면, 직접적인 방위산업화보다는 매력적인 시장으로 잔류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국가의 방위산업은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는 두 국가의 방위산업이 산업적 효율성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염두에 둔 서구의 방위산업과는 다른 요인을 통해 분석되어야 하며, 다소 상이한 전망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카자흐스탄의 방위산업

카자흐스탄 방위산업화가 역내 다른 국가들의 그것과 갖는 가장 큰 차이점은, 이미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소련으로부터 대규모의 방위산업단지를 물려받았다는 사실이다. 특히, 2차대전 중, 나치 전선이 소련의 심장부를 향하자, 유럽에 위치해 있던 다양한 군수공장들이 중앙아시아로 이전되기 시작했다⁷⁾. 그 중 대부분은 어뢰, 기뢰와 같은 해군장비에 관한 것이었으나, 냉전시기에 이르면, 미사일, 전차와 같은 육군장비로 확대되기 이르렀다⁸⁾.

그러나 냉전을 통해 소련이 붕괴하자, 카자흐스탄의 방산 공장들도 붕괴되기 시작했다. 특히, 카자흐스탄의 방위산업단지는 다른 소비에트 공화국들의 부품에 전

6) 실제로,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은 역내 러시아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나토와 교류를 확대하고 있으며, 나토표준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 "Minister: Azerbaijan producing NATO-standard weapons", Trends, 27 September 2016, (URL : <http://en.trend.az/azerbaijan/politics/2665137.html>, 검색일 : 2021.6.15.) ; "Constructing a modern military in Kazakhstan", EurasiaNet, Roger N McDermott, 21 August 2002, (URL: <https://www.refworld.org/docid/46c58ef728.html>, 검색일: 2016.4.1.)

7) Sebastien Peyrouse, "Armament Strategies and Development of the Kazakhstani Military-Industrial Complex: Stakes and Prospects", *CAP Papers* 185, May 2017, p. 9.

8) 소련시기 카자흐스탄이 생산하던 군사물자는 약 15억달러의 가치를 지녔으며, 전체 무기공장에서의 민수생산비율은 20%를 넘지않았다. Sebastien Peyrouse(2017), p. 9 ; Zhuldus Baizakova, "Kazakhstan's Military-Industrial Complex: 'Its Own' or 'Someone Else's'", FMSO, (Kansas : FMSO, 2014), p. 4.

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고, 어느 공장도 유지를 위한 완전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⁹⁾. 이에 따라 대부분의 무기공장들은 민간제품을 생산하는 형태로 빠르게 전환되었고, 몇몇 공장들은 채 몇 달을 버티지 못하고 폐쇄되기도 했다. 곧, 카자흐스탄은 역내에서 가장 풍부한 방위산업적 기반을 소련의 유산으로 받았으나, 이를 유지할 전문가와 국가적 역량은 전무한 상태였다¹⁰⁾.

2003년, 카자흐스탄이 국가 장기발전전략을 발표하면서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들이 감지되었다. 곧, ‘카자흐스탄 2030전략’으로 명명된 해당 전략에서 카자흐스탄의 최우선과제는 경제발전과 국가통합으로 설정되었으며, 국가의 자주성이 강조되었다¹¹⁾. 이에 따라, 카자흐스탄의 방위산업은 산업화의 연장선에서 강조되기 시작했으며, 무너진 방위산업을 복구시킬 다양한 전략들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카자흐스탄의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카자흐스탄 정부는 자원의 효율적 집행과 경쟁력확보를 위해 다양한 부문을 통합하고, 관련 부서들을 설치하여 산업을 견인했다. 이에 따라, 카자흐스탄 방위산업 또한 산업부와 국방부가 주도하여 여러 민간기업들을 통합하는 한편, 새로운 부처 설치를 통해 각 기관에 흩어져있던 정부기능을 통합하기 시작했다.

먼저, 독립초기 카자흐스탄은 방산관련 투자 및 중재기업의 주식을 경제통상부(Ministry of Economy and Trade) 산하 방위산업위원회(Defense Industry Committee)의 관리아래 두었다. 특히, 경제통상부는 해외파트너와 국내기업을 중재하는 기업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3년에 이르면, 국영 합자회사(JSC)인 ‘카자흐스탄 엔지니어링(Kazinziniring)’을 설립하여 관련기능을 통합하였다¹²⁾. 이후, 카자흐스탄 엔지니어링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 and Infrastructure)의 관리아래, 방산기업에서 에너지분야에 이르기까지 국내 기업들을 하나의 노드로 연결하여, 투자유치, 기술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방부 차원에서의 방위산업 통합은 1999년, ‘카즈스펙엑스포트(Kazspecexport)’의 설립을 통해 진행되었다¹³⁾. 특히 2001년 8월 7일, 카자흐스탄 정부결의안 제

9) Zhuldus Baizakova (2014), p. 49

10) Sebastien Peyrouse(2017), p. 9 ; Zhuldus Baizakova (2014), pp. 4-5,

11) 카자흐스탄은 해당 전략에서, 개방시장경제의 적극적 추진과 더불어 제조업 중심의 산업 다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President of Kazakhstan, “Prosperity, Security and Ever Growing Welfare of all the Kazakhstanis. Message of the President of the country to the people of Kazakhstan”, (URL: http://www.akorda.kz/en/kazakhstan/kazakhstan2030/strategy_2030, 검색일: 2021.6.17)

12) Zhuldus Baizakova (2014), p. 8

13) 1999년 최초 설립당시 카즈스펙엑스포트는 총리실에 소속되었으나, 2000년부터 국방부로 이관되었다. *ibid*, p. 9

1039호¹⁴⁾에 따라, 카즈스펙엑스포트는 카자흐스탄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군사 장비의 마케팅과 수출에 관한 기능을 통합하는 큰 노드를 형성하게 되었다¹⁵⁾.

이후 카자흐스탄의 방위산업은 2016년 새롭게 출범한 국방우주산업부(Ministry of Defense and Aerospace Industry)의 등장으로 새롭게 재편되었다. 국방우주산업부는 국방부로부터 방위산업 육성정책 결정권을, 투자개발부(Ministry of Investment and Development)로부터 우주산업관련 권한을, 국가경제부(Ministry of National Economy)로부터 자원배분 및 예산권을, 총리실(Prime Minister's Office)과 정보통신부(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activities)로부터 정보보안분야 등의 기능을 부여 받았다¹⁶⁾. 곧, 산업부, 국방부가 주도한 통합이 국영회사를 통한 민간통합이었다면, 국방우주부의 출범은 정부 기능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통합과정을 통해 재가동된 카자흐스탄의 방위산업은 민간영역과 이를 지원하는 공공영역(정부)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하고 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카자흐스탄 방산박람회인 KADEX(Kazakhstan Defense EXpo)로, 박람회기간동안 카자흐스탄 정부는 카자흐스탄 기업의 계약, 자금조달과 같은 부분들을 지원하기도 했다. 특히 방산품목의 경우, 일반 산업영역보다도 ‘카자흐스탄 내에서의 생산’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서방 기술 및 생산표준이 도입되어 일부 산업영역에 파급되기도 했다.

KADEX를 통해 소개된 대표적 기업으로, 카자흐스탄 아셀산엔지니어링(Kazakhstan Aselsan Engineering)의 경우, 열영상장비를 터키에 납품하기 시작했으며, 카자흐스탄 파라마운트 엔지니어링(Kazakhstan Paramount Engineering)과 다목적 전투 차량인 아를란(Arlan)을 개발하기도 했다. 또한, 카자흐스탄-프랑스 합작 기업인 그라나이트-테일스 전자(Granite-Tales Electronics)는 새로운 세대의 레이더기지인 누르(NUR)를 건설하기도 했다.

특히, KADEX를 통해 현지기업인 카자흐스탄 엔지니어링(Kazakhstan Engineering)은 2010년에 유로콥터와의 계약을 수주하게 되었는데, 카자흐스탄 2050전략에서 언급되는 ‘법인의 현지화와 기술이전’이라는 선행조건에 따라 이후 KH-145 라는 제

14) Kazakhstan Government Resolution No. 1039, "Individual Questions on the Turnover of Military Property," dated 7 August 2001

15) 카즈스펙엑스포트 웹사이트(URL : <https://kaspex.kz/en/index-page/>)

16) "Kazakhstan Creates Ministry of Defence and Aerospace Industry", THE ASTANATIMES by MALIKA ORAZGALIYEVA, 11 October 2016. (URL : <https://astanatimes.com/2016/10/kazakhstan-creates-ministry-of-defence-and-aerospace-industry/>, 검색일: 2021.6.15.)

식명으로 자국 내에서 생산에 돌입하였으며, 현지 정비 및 훈련 활동에 대한 방안도 계약에 포함되었다.

또한, 카자흐스탄 엔지니어링은 프랑스의 사젼(Sagem)사와 무인전술기(UAV)의 생산 및 판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무기공급국의 다양화는 러시아에 의존하던 과거와는 차별화된 변화로 인식된다. 더 나아가 2017년, 카자흐스탄 엔지니어링은 미그(MiG)와 전투기 현지생산과 정비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앞선 계약들과 마찬가지로, 미그(MiG)와의 계약도 전투기 생산과 정비의 현지화가 포함되어 있으며, 인적자원의 육성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었다.

아제르바이잔의 방위산업

아제르바이잔은 최근 유가하락으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아제르바이잔은 지난 두 차례(2014, 2016)의 성공적인 방산박람회 ADEX(Azerbaijan International Defence Industry Exhibition)의 경험과, NATO 기준(Standardization Agreement, STANAG)¹⁷⁾도입을 통한 방산기업 육성정책으로 자국 방위산업을 증진시켜나가는 한편, 최근 유가하락으로 말미암은 경제위기에도 일정한 비율로 군비를 증강하고 있다¹⁸⁾.

특히 광범위한 NATO 기준도입은 단지 NATO와의 관계증진이라는 표면적인 외교성과일 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축적되고 검증된 서방의 군사기술 도입을 통해 단기간에 자국의 군사기술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일환에서 아제르바이잔의 방위사업부(The ministry of Defense Industry) 장관 야바르 자말로프(Yaver Jamalov)에 따르면, “조만간 NATO기준을 만족하는 125개 품목의 방산물자가 생산 가능할 것이며, 이를 통해 방위기술증진과 방위산업육성에 탄력 받을 것이다.”는 자신감도 나타낸 바 있다¹⁹⁾.

17) STANAG는 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 회원국간 상호 운용성 확대를 위해 정한 ‘표준’으로, ‘장비에 대한 명명법(STANAG 2097)’에서 시작하여, ‘제식화기의 사용탄환(2310, 4172)’, ‘제공권장악에 관한 원칙(3805)’, ‘지상지원시 목표물보고에 따른 표준안(3596)’ 등 수백 개에 달하는 품목별 기준과 사양(certification)으로 구성되어 있음

18) IISS, 『The military balance 2016』, (London: IISS Press, 2017) ; Spi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한편, 방위산업의 측면에서, 아제르바이잔은 독립이후 상당기간동안 방위산업화를 위한 생산적 기반은 상당히 결여되어있는 상태였다. 특히, 독립이전부터 상당한 소련의 유산을 받았던 카자흐스탄과 대조적으로, 아제르바이잔 지역에는 군사물자 생산을 위한 기반은 거의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그나마 운영중인 공장들도 탄약과 소총 수리를 위한 제한된 부품생산들이 거의 전부였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아제르바이잔은 에너지자원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성장을 통해, 본격적인 산업화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아제르바이잔은 소수의 군수공장들을 중심으로 방위산업의 확대를 모색하게 되었는데, 소수의 군수공장은 그 자체로 기업화되어 특정 생산분야를 할당받는 한편, 이를 지원하는 국가 기관을 설립하여 행정기능의 통합을 이뤄냈다. 이에 따라, 아제르바이잔은 2005년 기존의 군사산업부(Ministry of Military Industry and the Armaments)와 군사과학센터(Military Science Center)를 통합하여 방위산업부(Ministry of Defense Industry)를 신설했다.

새롭게 출범한 아제르바이잔의 방위산업부는 외국기업과의 합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면허생산 등 생산관리를 통해, 아제르바이잔 군의 장비현대화와 국산화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는 카자흐스탄의 사례와 매우 유사하게, 아제르바이잔의 방위산업화 또한, 방위산업화의 속도나 시장의 통제가 정부에 의해 결정됨을 의미했다.

반면, 아제르바이잔이 자국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행정적 기능을 통합하였음에도, 산업화계획이 등장하는 2012년 이전까지 그들의 방위산업화는 큰 진전이 없었다. 곧, 아제르바이잔 방위산업부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 범위의 탄약과 무기체계 면허생산에만 국한되어 있었고, ‘산업’육성보다는 ‘시장’통제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²⁰⁾.

이러한 기존 방향은 다양한 산업화 계획과, 아제르바이잔 2020전략이 수립될 무렵 전면 수정되었다. 특히, 아제르바이잔 방위산업의 구체적 성과가 등장하게 되는 2017년, 자키르 하사노프(Zakir Hasanov) 당시 아제르바이잔의 국방장관은 2017년 7

19) "Minister: Azerbaijan producing NATO-standard weapons", Trends, , 27 September 2016, (URL : <http://en.trend.az/azerbaijan/politics/2665137.html>, 검색일 : 2021.6.15.)

20) 2009년까지 아제르바이잔 방위산업부는 16개의 공장을 갖추고 있었으나, 2012년에는 30개 이상의 공장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2007년과 2012년의 무기생산은 규모는 총 10배 이상 확대되었다, Tina Kharatyan, "The Military Doctrine of Azerbaijan: Assessing the Implementation Process and Policy Implication", *Contemporary Eurasia*, Vol. 7, No. 1-2, 2018, pp. 33-34

월의 인터뷰에서 최근 몇 년간 무기생산의 현대화는 질적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²¹⁾.

실제로, 아제르바이잔 방위산업부가 2008년 개발한 IST-14.5는 터키의 기계화학공업공사(Makina ve Kimya Endüstrisi Kurumu'ndan, MKEK)와 함께 개량작업을 거쳐, 2011년부터 터키에 수출되기 시작했으며, NATO 국가들에도 수출될 예정이다²²⁾. 또한, 같은 시기 아제르바이잔은 수입을 통해 획득하던 AK-74M를 면허생산²³⁾하는가 하면, 터키와 협력을 통해 자파르(Zafar) 권총을 생산하기도 했다²⁴⁾.

특히, 아제르바이잔은 2020년,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 분쟁에서 드론을 활용한 전술을 통해 큰 성과를 보였는데²⁵⁾, 이는 2010년부터 무인기 생산과 개발을 강조해온 아제르바이잔 방위산업의 큰 성과였다.

무인기 정책에 있어 아제르바이잔은 과거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던 획득정책을²⁶⁾ 2010년을 전후하여 국내 생산품의 비중을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아제르바이잔은 2009년 이스라엘과의 협력을 통해 시스템(AZAD Systems)을 설립하여 무인기분야의 본격적인 국내생산을 시도했다²⁷⁾. 이러한 결과로, 아제르바이잔의 무인기 시장은 크게 증가했으며, 이스라엘 및 터키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아제르바이잔의 방위산업화가 탄력받기 시작하자, 이는 방위산업박람회

21) “Закир Гасанов: переговоры по Нагорному Карабаху слишком затянулись”, РИА Новости1, 6:00 13.07.2017, (URL: <https://ria.ru/20170713/1498376245.html>, 검색일: 2021.6.15.)

22) “Azerbaycan mühendislerinin yaptığı “İstiklal” snaypırı Türkiye’de seri üretime girebilir“, 1news.com.tr, 30.04.2011, (URL: <https://web.archive.org/web/20110502005432/http://www.1news.com.tr/azerbaycan/siyaset/20110430024816857.html>, 검색일: 2021년 6월 11일)

23) “Azerbaijan begins AK-74M Production”, UPI, July 12, 2011, (URL: <https://www.upi.com/Defense-News/2011/07/12/Azerbaijan-begins-AK-74M-production/47161310488428/>, 검색일: 2021년 6월 15일)

24) “Two New pistols ZAFAR and ZAFAR-K accepted by the the Defense Ministry of Azerbaijan”, Army Recognition.com, August 1, 2012, (URL: https://www.armyrecognition.com/august_2012_new_army_military_defence_industry_uk/two_new_pistols_zafar_and_zafar-k_accepted_by_the_defense_ministry_of_azerbaijan_0108121.html, 검색일: 2021년 6월 16일)

25) Shaan Shaikh, Wes Rumbaugh, “The Air and Missile War in Nagorno-Karabakh: Lessons for the Future of Strike and Defense”, Critical Questions, CSIS (URL: <https://www.csis.org/analysis/air-and-missile-war-nagorno-karabakh-lessons-future-strike-and-defense>, 검색일 : 2021.6.16.)

26) “The numbers behind the worldwide trade in drones”, The Guardian by George Arnett, 2015, (URL: <https://www.theguardian.com/news/datablog/2015/mar/16/numbers-behind-worldwide-trade-in-drones-uk-israel>, 검색일: 2020년 5월 9일)

27) 이스라엘과의 전투드론 생산시설 설립에 대한 계약은 2009년 체결되었으나, 본격적인 생산은 2011년부터 시작되었다. 또한, AZAD 시스템은 2011년부터 이스라엘의 오비터(Orbiter) 드론을 아제르바이잔에서 생산하였고, 2016년에는 오비터의 아제르바이잔 버전인 자르바(Zarba)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Assessing Azerbaijan’s indigenous defense industry capabilities”, The Defensepost by Ayaz Rzayev, 2018, (URL: <https://www.thedefensepost.com/2018/05/07/azerbaijan-defense-industry-indigenous-opinion>, 검색일: 2021.6.8.)

(Azerbaijan Defense EXpo, ADEX)의 개최로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 아제르바이잔 방위산업부가 주도하는 ADEX는 단순히 무기획득을 넘어, 과거 양자관계를 통해 달성되던 합자회사 설립, 혹은 면허생산을 국제적 차원으로 끌어올렸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곧, ADEX는 아제르바이잔이 최신기술을 습득하고, 방위산업화에 대한 의지를 국제적으로 선언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²⁸⁾.

ADEX는 특히 카자흐스탄의 KADEX와 매우 유사한 형태로 개최되었는데, 단순한 조달계획에서부터 기술이전 이슈, 그리고 기술개발과 장기 조달계획을 위한 인적교류의 장이 제공되었다. 또한, ADEX는 2014년 개최와 동시에 꾸준히 규모가 증대되어, 주기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오는 2022년에 4번째 박람회가 예정되어 있다²⁹⁾.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 방위산업화의 주요 동인과 특징

후발국 방위산업화는 특정 요인이 독립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기 보다는, 그들의 복잡한 대외정치적 관계, 산업화, 군사력 건설과 같은 국내적 이슈, 그리고 자주성(autonomy)을 강조하는 이념적 차원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정치적 현상이었다. 곧, 후발국의 방위산업은 선진국과 유사한 형태를 지니지만, 방위산업에서 국가의 역할, 즉, 방위산업 정책은 단순한 지침을 넘어, 방위산업 그 자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³⁰⁾. 즉, 후발국의 방위산업은 민간영역보다는 국가의 영역에 다루어지는 ‘정치적’ 현상이었으며, 이에 따라 분석의 중심에는 방산기업의 경영전략보다는 국가의 ‘정책적 역할’이 강조되었다.

후발국 방위산업에서 국가성이 강조된다는 사실은,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의 방위산업화 또한 방위산업이 줄 수 있는 경제적 동기보다도, 국가적 필요에 의한 안보적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 도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두 국가의 방위산업화 동인은 국가를 중심으로 외적 측면(대외적 관계), 내적 측면(산업화와 군사력 건설)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28) “ADEX 2014”, Ministry of Defense Industry of Azerbaijan, 10.09.2014 12:27, (URL: http://archive.adex.az/2014/?p=news__read&t=press_releases&q=1&l=en, 검색일: 2019년 8월 14일)

29) ADEX 2014(2014.9.11.-13.), ADEX 2016(2016.9.27.-30.), ADEX 2018(2018.9.25.-27.), ADEX 2022(2022.9.6.-8.)

30) Rodney W. Jones and Steven A. Hildreth, 『Modern Weapons and Third World Powers』, (Boulder, CO: Westview Press, 1984), pp. 47-54

먼저, 대외적 측면에서 방위산업화는 국가적 위협인식과 대 강대국 정책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런데, 후발국의 경우, 국가적 위협인식의 증가가 군사력 건설로 이어져, 방위산업화를 추구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즉, 군사력 건설은 무기 소요의 증가로 이어지는데, 이는 방위산업뿐 아니라, 수입을 통해서도 달성될 수 있는 목표이다³¹⁾. 예컨대, 1, 2차 걸프 전쟁에서 전면전을 경험했던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국가는 군사력 건설에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도, 방위산업화 보다는 수입을 통한 무기획득을 선호하고 있다.

실제로, 위협인식의 측면에서 아제르바이잔의 위협인식은 독립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나고르노-카라바흐지역을 둘러싸고 아르메니아와의 군사적 충돌이 이어짐에 따라, 군비는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대대적인 획득사업과 방위산업화로 이어지기도 했다.

반면, 방위산업화가 강조되던 시기 카자흐스탄의 위협인식은 감소하였다. 즉, 독립 이후 3차 군사독트린 이전까지 카자흐스탄이 직면한 국가적 위협은 국가간 전면전에 기인한 것이었으나, 이후 독트린에서는 역내 치안을 저해하는 테러리즘을 주된 위협으로 두고 있다³²⁾. 이는 다시말해, 후발국 방위산업화 동인의 외적 측면에 있어, 국가적 위협인식은 주된 독립변수로 간주되기 어렵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런데, 방위산업화의 측면에서, 두 국가에서는 공통적으로 높은 러시아 의존도가 발견된다³³⁾. 곧,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은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러시아와 양자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려 하면서도, 국가 전역에 걸친 높은 러시아 의존도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남아있었다. 이에 따라, 두 국가는 무기체계 대부분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꾸준히 비-첨단무기 분야에서 서서히 자국산 무기와 비-러시아계 무기 비율을 높여나가고 있다³⁴⁾.

또한, 양국의 높은 러시아 의존은 그들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후원-의존관계

31) J.D Kenneth Boutin(2009), p. 355

32) 카자흐스탄의 군사독트린은 독립이후 현재까지 5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3차 군사독트린(2007)부터 주된 위협인식은 역내평화를 저해하는 저강도 분쟁과 강대국을 배제한 비슷한 규모의 국가간 전쟁인 중간강도 분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이 역내 중자자 역할의 강조와 이를 통한 통합을 강조함에 따라, 중간강도 분쟁보다는 저강도 분쟁을 더욱 큰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33) 카자흐스탄의 경우, 1992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 무기시장에서 러시아 의존도는 85%를 상회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동안 아제르바이잔의 경우 또한 5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SIPRI Arms Transfer Database 1992-2019

34)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은 서방과의 협력 확대를 위해, 균형적 외교정책을 대외정책의 축으로 삼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기수입의 다변화가 발견된다.

(Patron-Client)로 바라보게 만든다. 이 경우, 후원국인 러시아는 의존국인 두 국가의 방위산업화에 따라, 기대효용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고 그들의 방위산업화를 지연시킬 것이라는 이론적 추론을 가능케 한다³⁵⁾.

그런데, 후원국인 러시아는 의존국의 방위산업화와 무기수입선 다변화 전략으로 인한 기대이익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두 국가의 방위산업화 억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러시아는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이 자국 무기체계 일부의 면허생산을 허가함으로써, 제한적으로나마 방위산업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³⁶⁾.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이 러시아 무기사용권역에 잔류토록 함으로써³⁷⁾, 러시아의 첨단무기 시장을 확보하는 한편, 자국의 방산역량을 첨단무기개발에 집중시키는 기회로 활용한 것이다³⁸⁾. 이는 국제적 방산계층론에서 나타나는 ‘계층간 역할’과, ‘역할 이전현상’과 일치하며, 러시아는 대외적 측면에서 두 국가 방위산업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후발국 방위산업화는 방위산업화를 위한 국가의 내적 측면, 즉, 산업화와 군사력 건설정책의 영향을 받는다. 즉, 생산-소비의 측면에서, 산업화는 방산물자의 ‘생산’을, 군사력 건설은 방산물자의 ‘소비’를 의미한다. 특히, 두 국가의 방위산업화가 산업화, 군사력 건설이 강조되던 시기와 일치한다는 점은, 그들의 방위산업화가 내적역량 강화의 연장선에서 발생했음을 추론할 수 있게 한다.

양국 방위산업이 산업화의 연장선에서 강조됨에 따라, 그들의 방위산업화는 개발역량보다도 생산역량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양국의 방산박람회(KADEX, ADEX)에서 성사된 계약들은 면허생산, 국내생산과 같은 ‘생산’ 이슈와 기술이전을 계약의 전제로 삼기도 했다³⁹⁾. 곧,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은 방산물자의 국내생산

35) 장은석(2005), “후원-의존관계에서 약소국 방위산업 발전의 전망과 한계”, 국방정책연구, 제21권 69호, pp.18-22

36) 카자흐스탄의 경우, MiG-35 등 전투기 일부와 장갑차량들이 면허생산되고 있으며, 아제르바이잔은 최근 러시아제 소화기와 드론, 탄약들을 면허생산하기 시작했다.

37)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의 방위산업화는 첨단무기가 아닌, 소총, 탄약, 무인기와 같은 제한적 범위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산업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분야만이 강조되고 있다.

38) 러시아 방위산업에서 소총, 탄약과 같은 재래식 무기 생산비용은 1990년과 비교하여 2000년 이후에 크게 감소했으나, 첨단무기 개발을 위한 연구 및 제반비용은 오히려 크게 증가했다. 이는 국제무기시장이 미국과 유럽, 그리고 러시아로 분할되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전략이며, 국제방산계층론에서 주장하는 이전현상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39) “Kazakhstan Defence Industry Grows Globally”, PR Newswire, News from paramount group, May 23, 2018, 22:30 ET, (URL: <https://www.prnewswire.com/news-releases/kazakhstan-defence-industry-grows-globally-300654033.html>, 검색일: 2021.0616)

을 통해, 고용 창출과 이중목적기술 도입, 그리고 생산 인프라의 정비 등, 방위산업과 산업화의 상호 파급효과를 연계하려 하고 있다.

한편,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의 방위산업화는 그들의 군사력 건설정책, 즉, 군사 독트린(Military Doctrine)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곧, 군사 독트린은 양국이 군사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위협요인을 정의하고 있으며, 방산물자의 소비패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러시아와의 전면전보다는 역내 통합을 저해하는 분리주의와 테러리즘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동장비와 항공 전력에 보강되었다⁴⁰⁾. 한편, 아제르바이잔 군사 독트린이 영토회복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위협요소로 정의내림에 따라, 아제르바이잔군은 전차와 전투기 등 주력 전투병기의 현대화가 강조되었다. 또한, 분쟁지역으로 신속히 병력을 수송하는 체계, 즉, 수송헬기, 장갑차량 등 전투지원 분야가 강조되기도 했다⁴¹⁾.

비록,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의 방위산업화 추구요인이 자국 방위산업의 생산-소비의 측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이 또한 주된 동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산업적 측면에서 양국의 방위산업화는 산업과의 상호 파급효과(spin-on, off)가 여전히 미비한 수준이다⁴²⁾.

또한,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군의 규모는 6만여 명 내외로⁴³⁾, 방위예산의 증액을 고려할지라도, 자국군의 현대화와 무기 소요만으로는 방위산업화의 동인이 되기 어렵다. 오히려, 실험적인 두 국가의 방위산업화로 말미암아, 낮은 품질과 높은 생산단가를 고려하면, 방위산업화보다는 수입을 통한 무기획득이 더욱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다.

셋째, 후발국의 방위산업화가 안보의 영역에서 다루어진다면, 그들의 방위산업화는 언급한 국가의 대외적 측면과 내적 측면 외에도, 후발국의 ‘정치적 의지’가 고려될 수 있다. 특히, 방위산업화는 일국이 방위산업을 추구하기 위한 인식론적 배경과 국가적 역량이 갖추어졌다고 할지라도, 이를 추구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전제

40) Kazakhstan, "Қазақстан Республикасының Әскери доктринасын бекіту туралы", Decree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dated February 10, 2000 N 334)

41) "The Military Doctrine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 Jan 8, 2010. № 1024-IIIQR

42) 자료들에 따르면,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 방위산업화가 각국의 제조업과 연계된 지수는 6% 내외이며, 제조업은 전체 GDP에서 6%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Macroeconomic indicators of Kazakhstan demonstrate positive dynamics — Ministry of National Economy", primeminister.kz, Thursday, 11 March 2021, 10:31:08, (URL: <https://www.primeminister.kz/en/news/kazakstannyn-makroekonomikalyk-korsetkish-teri-on-udersti-korsetip-oty-kr-uem-1123819>, 검색일: 2021.5.1.) ; Trending Economics database

43) IISS, 『The Military balance 2019』, (London : IISS Press, 2020)

되어야만 한다. 만일, 정치적 의지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후발국은 방위산업화를 추구하기보다 방산 소비시장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⁴⁴⁾.

실제로 다민족 신생국으로 출발한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은 새로운 민족-국가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사회를 관통하는 다양한 국가통합전략을 시행하고 있으며, 산업화와 방위산업화는 그 연장선에 위치해 있다⁴⁵⁾. 특히, 두 국가는 산업화를 단지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뿐 아니라, 다양한 민족에서 발현되는 다양한 요구와 도전을 해결하는 본질적 해결책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두 국가 방위산업화의 이념적 배경은 장기발전전략 수립의 토대가 되는 한편, 산업화가 국가적, 민족적 목표가 됨으로써 추진력을 얻게 되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이 방위산업을 산업적 측면이 아니라, 안보의 영역으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즉, 양국의 방위산업화는 당장의 획득비용 감소를 목표로 두지 않았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독립적 군사장비의 생산역량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는,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의 방위산업이 국가적, 민족적 자주성을 회복하는 수단이 되어, 당장의 산업적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이념적 정당성을 갖게 되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결론 및 전망

살펴본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의 방위산업은 정치적 정당성과 자주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강조되며 발전했다. 이러한 그들의 방위산업 발전과정은 국제적

44) 방위산업화를 위한 정치적 의지는, 기존연구에서 ‘기술-민족주의(techno-nationalism)’라는 개념과 연결된다. 이는 일국의 기술의 수준이나, 기술적 성과 등이 민족적 지향(national orientation)을 통해 애국주의(patriotism)와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다시말해, 방위산업화가 기술민족주의와 연결되는 경우, 방위산업의 성과는 민족적, 국가적 성과고 연결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할 것. Christopher W. Hughes, “The slow death of Japanese techno-nationalism? Emerging comparative lessons for China's defense production”, *The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34 Issue 3, 2011, p. 453.

45) 이는 시민-영토적 민족주의(civic-territorial nationalism)의 연장선에서 출발한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의 초민족적 개념인 ‘카자흐스탄인(Kazakhstani)’, ‘아제르바이잔인(Azerbaijani)’이라는 개념과, 기술 민족주의가 연결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즉, 두 국가가 경제성장을 통한 민족통합이라는 목표를 국가적 목표로 상정함에 따라, 방위산업화 또한 국가적 목표로 설정되었다. Kazakhstan, “On the Concept of the Foreign Polic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for 2020-2030”, Approved by Decree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of March 6., 2020, № 280 ; Azerbaijan, “National Security Concept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 Approved by Order No. 2198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 on 23 May 2007

상호의존과 통합을 강조하는 서구사회의 방위산업과는 다른 방향에서 성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방위산업의 생산과 관련된 문제는 단지 산업-경제적 이슈를 넘어, 정치적 문제로 확대되었으며, 국가안보의 영역에서 다루어졌다.

현재까지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들 방위산업화는 태생적으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있다. 즉, 방위산업화를 의미하는 ‘자립성(*autarky*)’은 국제적 상호의존의 확대와 후발국 역량의 한계로 말미암아 본질적으로 달성되기 매우 어려운 목표이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정분야의 성장은, 다른 분야에서의 의존 심화를 초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주장하는 방위산업화를 통한 국가적, 민족적 자주성(*autonomy*)과 자립성의 확대는 처음부터 달성 불가능한 정치적 목표였을지 모른다.

그럼에도,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이 산업화와 경제성장이 꾸준히 성과를 내며 계속되고, 정치적 정당성이 뒷받침된다면, 그들의 방위산업은 정치적 지렛대를 통해 크게 탄력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그들의 생산중심 제한적 방위산업화⁴⁶⁾는 오히려, 국내생산이라는 정치적 정당성을 얻으면서도, 검증된 선진 무기체계의 획득을 통해, 정치적-산업적-군사적 이점을 모두 누리게 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국가성과 정치적 정당성이 강조되는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 방위산업은 신흥 방산시장 개척을 강조하는 한국에게도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주고 있다. 즉, 두 국가 또한 한국처럼 국산화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이 과거와 같이 생산 중심, 완제품 중심의 국산화 전략에 매몰되는 한, 한국의 신흥시장 개척은 심각한 도전에 맞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의 높은 러시아 의존은 전차, 전투기 등 주력전투병기 위주의 수출전략을 고수하는 한국의 수출전략이 재고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한국이 첨단무기 대부분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두 국가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이해관계 충돌을 불러올 수 있는 주력 무기체계보다는 도하차량, 광학장비 등 비교적 틈새 분야의 협력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

언급한 점들이 전제된다면, 한국은 국제 방산계층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뿐 아니라, 새로운 방산 후발국으로의 시장확대를 담보할 수 있

46)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의 방위산업은 개발이슈 보다 국내생산 관련 이슈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합작회사 설립을 통해, 생산품목 또한 선진무기체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즉, 제한된 방위산업화는 그들의 제한된 개발역량에서 출발했지만, 오히려 국내 방위산업 지원비용의 절감, 국내생산을 통한 고용 확대, 선진무기 획득을 통한 작전적 역량 확보 및 건진국과의 군사적 상호운용성 확대 등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으며, 두 국가와도 정치적, 실리적 상호이익을 가능케 하는 방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뉴스자료)

- “ADEX 2014”, Ministry of Defense Industry of Azerbaijan, 10.09.2014 12:27, (URL: http://archive.adex.az/2014/?p=news__read&t=press_releases&q=1&l=en, 검색일: 2019년 8월 14일)
- “Assessing Azerbaijan’s indigenous defense industry capabilities”, The Defensepost by Ayaz Rzayev, 2018, (URL: <https://www.thedefensepost.com/2018/05/07/azerbaijan-defense-industry-indigenous-opinion>, 검색일: 2021.6.8.)
- “Volume growth of defense industry production in Kazakhstan is 4 pct”, AzeriNews by Abdul Kerimkhanov, 14 February 2019, (URL: <https://www.azernews.az/region/145682.html>, 검색일: 2021.6.10.)
- “Azerbaijan begins AK-74M Production”, UPI, July 12, 2011, (URL: <https://www.upi.com/Defense-News/2011/07/12/Azerbaijan-begins-AK-74M-production/47161310488428/>, 검색일: 2021년 6월 15일)
- “Azerbaycan mühendislerinin yaptığı “İstiklal” snaypırı Türkiye’de seri üretime girebilir“, 1news.com.tr, 30.04.2011, (URL: <https://web.archive.org/web/20110502005432/http://www.1news.com.tr/azerbaycan/siyaset/20110430024816857.html>, 검색일: 2021년 6월 11일)
- “Kazakhstan Creates Ministry of Defence and Aerospace Industry”, THE ASTANATIMES by MALIKA ORAZGALIYEVA, 11 October 2016. (URL : <https://astanatimes.com/2016/10/kazakhstan-creates-ministry-of-defence-and-aerospace-industry/>, 검색일: 2021.6.15.)
- “Constructing a modern military in Kazakhstan”, EurasiaNet, Roger N McDermott, 21 August 2002, (URL: <https://www.refworld.org/docid/46c58ef728.html>, 검색일: 2021.6.10.)
- “Minister: Azerbaijan producing NATO-standard weapons”, Trends, 27 September 2016, (URL : <http://en.trend.az/azerbaijan/politics/2665137.html>, 검색일 : 2021.6.15.)
- “The numbers behind the worldwide trade in drones”, The Guardian by George Arnett, 2015, (URL: <https://www.theguardian.com/news/datablog/2015/mar/16/numbers-behind-worldwide-trade-in-drones-uk-israel>, 검색일: 2021년 6월 10일)
- “Two New pistols ZAFAR and ZAFAR-K accepted by the the Defense Ministry of Azerbaijan”, Army Recognition.com, August 1, 2012, (URL: https://www.armyrecognition.com/august_2012_new_army_military_defence_industry_uk/two_new_pistols_zafar_and_zafar-k_accepted_by_the_defense_ministry_of_azerbaijan_0108121.html, 검색일: 2021년 6월 16일)

- “Закир Гасанов: переговоры по Нагорному Карабаху слишком затянулись”, Р ИА Новости1, 6:00 13.07.2017, (URL: <https://ria.ru/20170713/1498376245.html>, 검색일: 2021.6.15.)
- “Kazakhstan Defence Industry Grows Globally”, PR Newswire, News from paramount group, May 23, 2018, 22:30 ET, (URL: <https://www.prnewswire.com/news-releases/kazakhstan-defence-industry-grows-globally-300654033.html>, 검색일: 2021.06.16)
- “Macroeconomic indicators of Kazakhstan demonstrate positive dynamics — Ministry of National Economy”, primeminister.kz, Thursday, 11 March 2021, 10:31:08, (URL: <https://www.primeminister.kz/en/news/kazakstannyn-makroekonomikalyk-korsetkishteri-on-udersti-korsetip-otyr-kr-uem-1123819>, 검색일: 2021.5.1.)

(논문)

- Christopher W. Hughes, “The slow death of Japanese techno-nationalism? Emerging comparative lessons for China's defense production”, *The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34 Issue 3, 2011
- IISS, 『The military balance 2016』, (London: IISS Press, 2017)
- _____, 『The military balance 2018』, (London: IISS Press, 2019)
- Mark Eaton, “Major trends in military expenditure and arms acquisitions by the states of the Caspian region”, in Gennady Chufrin, 『THE SECURITY OF THE CASPIAN SEA REGION』,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ResearchAndMarkets, 『Future of the Kazakh Defense Industry 2018-2023: Market Attractiveness, Competitive Landscape & Forecasts』, (Online Publisher: GlobalData, 2018)
- Rodney W. Jones and Steven A. Hildreth, 『Modern Weapons and Third World Powers』, (Boulder, CO: Westview Press, 1984)
- Sebastien Peyrouse, “Armament Strategies and Development of the Kazakhstani Military-Industrial Complex: Stakes and Prospects”, *CAP Papers* 185, May 2017
- Shaan Shaikh, Wes Rumbaugh, “The Air and Missile War in Nagorno-Karabakh: Lessons for the Future of Strike and Defense”, *Critical Questions*, CSIS (URL: <https://www.csis.org/analysis/air-and-missile-war-nagorno-karabakh-lessons-future-strike-and-defense>, 검색일 : 2021.6.16.)
- Tina Kharatyan, “The Military Doctrine of Azerbaijan: Assessing the Implementation Process and Policy Implication”, *Contemporary Eurasia*, Vol. 7, No. 1-2, 2018
- Zhulduz Baizakova, “Kazakhstan’s Military-Industrial Complex: “Its Own” or “Someone Else’s””, FMSO, (Kansas : FMSO, 2014)
- 장은석, “후원-의존관계에서 약소국 방위산업 발전의 전망과 한계”, *국방정책연구*, 제21권 69호, 2005

(법령)

Azerbaijan Professor “National Security Concept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 Approved by Order No. 2198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 on 23 May 2007

President of Kazakhstan, “Prosperity, Security and Ever Growing Welfare of all the Kazakhstanis. Message of the President of the country to the people of Kazakhstan”, (URL: http://www.akorda.kz/en/kazakhstan/kazakhstan2030/strategy_2030, 검색일: 2021.6.17.)

Kazakhstan Government Resolution No. 1039, “Individual Questions on the Turnover of Military Property,” dated 7 August 2001

Kazakhstan, “Қазақстан Республикасының Әскери доктринасын бекіту туралы”, Decree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dated February 10, 2000 N 334)

Kazakhstan, “On the Concept of the Foreign Polic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for 2020-2030”, Approved by Decree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of March 6., 2020, № 280

“The Military Doctrine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 Jan 8, 2010. № 1024-IIIQR

제2분과

부경대 글로벌물류경영 연구소

1. 컨테이너 화물 운전자의 운전 외 노동에 대한 문제
발표: 이하연(부경대)
2. 한국 수출화물의 기술 수준 유형별 구성 변화와 운송수단
활용 특성
발표: 신민정(부경대)
3. 코로나-19가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 한·중 항공회사를 중심으로
발표: 왕주에(부경대)
4. 중국 관광회사의 주가변동성에 관한 연구
: DCC-BEKK 모형
발표: 왕야리(부경대)

컨테이너 화물 운전자의 운전 외 노동에 대한 문제

저자 : 이하연·조찬혁(부경대)

발표자 : 이하연(부경대)

컨테이너 화물운전자의 운전 외 노동에 대한 문제

부경대학교 대학원 이하연
부경대학교 국제통상학부 조찬혁 교수



목차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선행연구
4. 연구문제
5. 사전인터뷰
6. 기대효과

1. 연구의 배경

- 컨테이너는 선사의 재산이므로 선사에서 관리를 해야함
- 컨테이너 운전기사가 터미널에서 배정받은 공컨테이너는 각종 쓰레기, 흙먼지, 녹 등으로 오염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 과거에는 청소업체에서 컨테이너 검수와 청소를 하였지만 현재는 운전기사가 하고 있음



3

1. 연구의 배경



- 상태가 나쁜 컨테이너를 교환하려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간을 맞추려면 웬만해서 운전기사가 직접 해결
- 컨테이너 운전기사들이 아무런 대가를 못 받고 공컨테이너 내부청소나 위험화물 스티커 제거 작업을 하고있으며, 이로 인해 각종 사고도 발생
- 컨테이너 운전기사의 컨테이너 청소 및 수리는 공식적인 노동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나 부상 발생 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음
- 불량컨테이너를 청소하고 수리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이는 과속이나 졸음운전으로도 이어짐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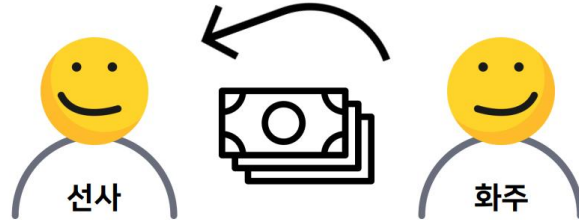
1. 연구의 배경

1. Effective Date: 1st Dec 2019 (AS of On Board Date)

2. Tariff

Kind	Brand	Trade	Cur.	Type	Size	As Is	To Be
CCP	US	ALL	KRW	DC	20'	25,000	35,000
				DC	40'/45'x45'	40,000	50,000
				DC	20'	25,000	35,000
				DC	40'/45'x45'	40,000	50,000
				DC	20'	25,000	35,000
				DC	40'/45'x45'	40,000	50,000
				DC	20'	25,000	35,000
				DC	40'/45'x45'	40,000	50,000
				DC	20'	25,000	35,000
				DC	40'/45'x45'	40,000	50,000

컨테이너 청소비 포함 비용 지불



컨테이너 세척 비용

- 컨테이너가 국내에 도착 후 컨테이너 내부 모든 화물을 꺼내고 공컨테이너 내부의 세척 및 남아있는 폐기물 처리를 할 때 발생하는 세척비용
- 깨끗한 컨테이너라도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청구

DRY	20ft	35,000원
	40ft	50,000원
REFFER	20ft	40,000원
	40ft	60,000원

HMM 등 주요 선사자료 집계

5

1. 연구의 배경

- 정상적인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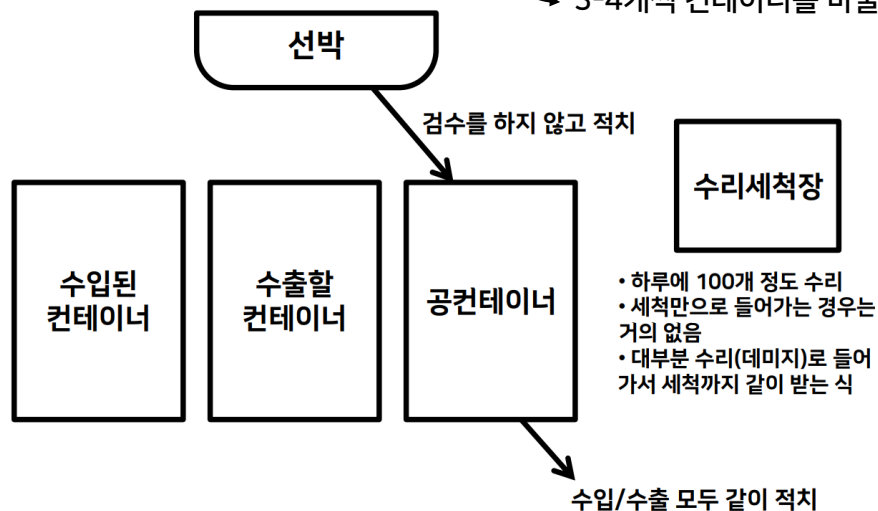
본선 하역 → 검수 → 사운드(상태가 좋은 컨테이너)
→ 데미지(수리가 필요한 컨테이너)

- 현재 상황

본선 하역 → 한꺼번에 적치 → 반출할 때 기사들이 불량 확인

→ 따로 적치

→ 3-4개씩 컨테이너를 바꿀 수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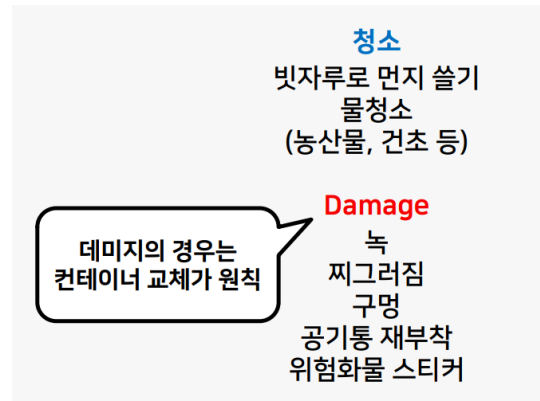
6

1. 연구의 배경



그래도 이컨 깨끗한 컨테이너지만
바닥에 기름때 자국때문에 세척을 합니다

머슬달마(유튜브). (2018, Oct 8).
셀프세차장에서 컨테이너 세척하기



- 불량컨테이너
: 내외부 손상/녹슬음/찌그러짐/구멍/쓰레기나 흙먼지, 생물이 들어있는 컨테이너

7

2. 연구의 목적

중요성

- 우리나라 육상물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컨테이너 운전기사의 근로환경개선
- 컨테이너 청소문제 발생의 실태 및 현황 분석
- 저렴한 컨테이너 보관료와 수출비율이 높아 공컨테이너가 부족한 우리나라의 컨테이너 관리 부분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필요

필요성

- 불량컨테이너에서의 유해생물 또는 바이러스 유입 위험 방지
- 선사와 컨테이너 운전기사 사이의 근로자 갑을관계 문제 시사점 도출

8

2. 연구의 목적

차별성

- 컨테이너 청소 및 수리, 관리에 관한 이전의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음

확실성

- 인터뷰와 설문지법을 통해 허황되지 않은 현실을 반영

실현 가능성

- 부산항만공사의 규제나 화물연대의 토로 등 현실적인 움직임이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 인지를 위한 시사점 제시

9

3. 선행연구

저자	논문제목	연구내용
윤원영 안창근 최용석 (1999)	공 컨테이너를 고려한 컨테이너 내륙수송에서의 차량 배치문제	• 컨테이너 내륙수송에서의 배차계획 문제를 다루며, 컨테이너 터미널에서의 공컨테이너 이동시간 최소화를 위한 배차계획을 모형화
노홍승 강상곤 장소영 (2008)	인과관계맵을 이용한 국내 화물자동차운수시장 구조의 가시화	• 국내 화물자동차운수시장의 구조를 인과관계맵으로 가시화 •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근로여건 악화, 차량수급 불균형, 불공정 거래구조 등 다양한 문제를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수립에 기여
윤동하 최용석 김선구 (2014)	컨테이너터미널의 사고유형에 따른 리스크 등급 산정 및 분석	• 컨테이너 터미널의 사고를 대상으로 각 사고의 발생빈도와 심각도를 산정하고, 주요 사고유형에 대한 사고원인 리스크를 분석하여 사고감소를 대책을 위한 분석 • 작업 영역별로 컨테이너 및 화물 손상 현황을 수치로 알 수 있었음
장동원 (2015)	컨테이너터미널 반출입트럭 운영관리시스템의 국내외 현황 및 시사점	• 국내 및 해외 사례를 이용하여 게이트를 통한 컨테이너 반출입 운영문제와 반출입 트럭 운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 도출

10

3. 선행연구

저자	논문제목	연구내용
윤태한 (2015)	컨테이너 육상운송기업의 협력사 인간관계가 기업운 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 증연구 : 하청운송업체를 중 심으로	우리나라 컨테이너 육상운송시장의 현황과 특수성을 파악하고 향후 발전적 방향으로 시사점 제시
차상현 노상균 (2015)	컨테이너터미널에서 On- Dock 시스템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광양항을 중심 으로-	수입 화물에 대해 D/O를 관리하며, 반출 후 회수 관리와 컨테이 너의 손상, 청소, 수리, 제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므로 대외 선사 서비스를 강화하여 컨테이너터미널 물량 유치 및 영업 증대
김기영 남태현 공정민 여기태 (2017)	EMU(Empty Management Unit)의 운 영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 간 수출입물량 불균형에 대한 공컨테이너의 효율적인 운송 방법을 정리하고 공컨테이너 이송비용을 감안한 판매정책에 따 라 공컨테이너 직접 이송 대신 화물을 적재한 Full 컨테이너로 장 비를 회수할 때 변화를 A선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증분석
이훈 김갑환 (2018)	공 컨테이너 반출 시 발생하 는 재취급 횟수 비교	- 공컨테이너 장치장의 한정된 공간에서 공컨테이너를 선사별, 컨 테이너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고 혼적하여 보관하면 반출 시에 재 취급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 - 공컨테이너 재취급 횟수를 줄여 작업생산성을 향상하고 운영비 용을 절감

11

4. 연구문제

- 선사별로 컨테이너 수리 물량 및 비율의 차이가 있는지 조사
- 장거리와 단거리 컨테이너 운송기사들의 컨테이너 청소 및 수리 비율의 차이 조사
- 운전기사의 처리실적과 컨테이너 청소 및 관리의 상관관계 분석
- 운전기사 특성별 향후 대책에 대한 방향성 차이 분석
- 컨테이너 규격별 청소시간 차이 분석
- 컨테이너 종류별 청소 및 관리의 차이 분석

12

5. 사전인터뷰

인터뷰 질문 및 예상답변

Q1. 하루에 접하는 컨테이너 중 깨끗한 컨테이너에 비해 청소나 수리가 필요한 컨테이너의 비율

예상답변: 불량컨테이너 중 청소나 수리가 필요한 컨테이너 비율은 40%정도가 될 것이다.

Q2. 컨테이너 청소 및 수리를 전가시키는 주체

예상답변: 선사나 터미널 운영사에서 시킬 것이다. / 관례적으로 할 것이다.

Q3. 컨테이너 청소나 수리를 하는 장소 및 방법

예상답변: 터미널에서 화주에게 운송하는 중 길가에서 할 것이다.

Q4. 청소를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

예상답변: 찌그러짐을 펴는 작업이나 위험화물 스티커 작업이 힘들 것이다.

14

5. 사전인터뷰

인터뷰 질문 및 예상답변

Q5. 청소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

예상답변: 화주가 공컨테이너를 거절할 것이다. 다시 터미널에서 새로운 컨테이너로 교체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시간과 통행료 같은 비용이 발생될 것이다.

Q6. 청소 및 수리 후 보상의 유무

예상답변: 컨테이너 운전기사에게 컨테이너 청소 및 수리는 계약된 노동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이 없거나 적을 것이다.

Q7. 개선되었으면 하는 요구사항

예상답변: 컨테이너 청소 및 수리 업무 배제 / 금전적인 보상

15

5. 사전인터뷰

인터뷰 요약

- 운송하는 거리에 상관 없이 청소 전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 컨테이너 청소 및 수리에 대한 보상은 없음
- 컨테이너 찌그러짐의 경우 데미지 컨테이너로 분류되어 교체를 해야함
- 녹이 슬어 표면을 벗겨내고 페인트칠을 하는 것도 데미지 컨테이너로 분류가 되어야 하나 운전기사가 부담하는 사례도 있음
- 위험화물 스티커의 경우 데미지 컨테이너로 분류하고 있으나 스티커 제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터미널에서 검수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음
- 건초 화물을 옮겼던 컨테이너의 경우 찌꺼기가 많이 남아 있으면 반납지에서 세척을 해주지 않아 운전기사가 빗자루로 청소를 해야함
- 신속한 운송이 중요한 컨테이너 운전기사들은 작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운전기사 스스로 청소를 하고 있음

16

6. 기대효과

- 학문적 연구의 부족
 - 학계의 무관심
 - 연구 주제의 기점
 - 문제의 해결
- (1) 선사가 해야 할 도리를 한다.
- 컨테이너 수리세척장의 규모 및 지원을 확대
 - 컨테이너 수리 및 세척 업종 근로자 고용 수를 확대
 - 컨테이너 운전기사의 위험화물 스티커 제거 금지에 대한 부산항만공사의 규제처럼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
- (2) 부득이하게 운전기사가 컨테이너 청소를 한다.
- 청소 또는 수리 노동에 대한 보상을 선사가 지급
 - CY에서 데미지 컨테이너 교체를 원하는 트레일러를 따로 조치
 - 터미널 외 청소장소를 제공

17

감사합니다



한국 수출화물의 기술 수준 유형별 구성 변화와 운송수단 활용 특성

저자 : 신민정· 이정윤(부경대)

발표자 : 신민정(부경대)

한국 수출화물의 기술 수준 유형별 구성 변화와 운송수단 활용 특성

신민정¹⁾ · 이정윤²⁾

Changes in the Composition of Korean Export Items by Type of Technology Level and Characteristics of Transportation Mode Choice

Min-Jung Shin* · Jung-Yoon Lee**

〈목 차〉

Abstract

I. 서론

II. 분석 자료 개요 및 구축 방법

III. 기술 수준별 국내 수출품목 특성 변화

IV. 기술 수준별 수출화물의 운송수단
활용 특성

V.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hanges in the structure of the Korean export industry and composition of export items. Also we analyze the effect of these changes on the international freight transportation mode choice pattern. Korea's exports are gradually changing into a competitive structure that uses both air and sea shipping, suggesting that the importance of research on transportation mode choice is growing in line with the changes in the global supply chain structure.

Keywords : Export, Technology Level, Transportation Mode Cho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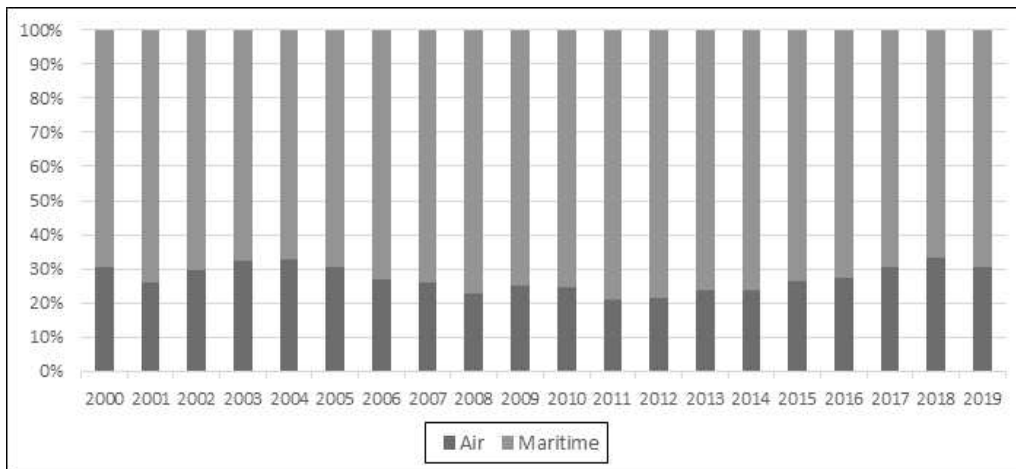
1) (제1저자)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 연구원.

** (교신저자) 부경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교수. Email : geologis@pknu.ac.kr

I. 서론

특정 국가의 산업구조 변화는 수출품목 구성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를 수송하는 국제화물 운송수단 분담률에도 변화를 초래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 수출품목의 시기별 구성 변화 특성을 연관 수출산업의 기술 수준과 연계하여 살펴보고, 이와 같은 변화가 국제화물 운송수단 선택 결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림 1> 한국의 운송수단별 수출액 규모(2000-2019)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 재가공

II. 분석 자료 개요 및 구축 방법

대외 무역거래 상품들의 유형을 분류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WCO가 제정한 국제통일 상품분류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이하 HS code)를 따르는 것이나, HS code는 국제무역을 원활히 하

고 관세율 적용의 일관성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통일 기호’에 불과하므로 특정 국가의 수출입 산업구조나 기술 수준 등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하다. 이에 한국은 산업별 HS code를 연계하여 재구성한 산업자원부 품목분류표(MTI code)를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2004년 이후부터는 ‘산업통계분석시스템(Industrial Statistics Analysis System, 이하 ISTANS)’이라는 신규 분석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 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글로벌 상품교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조업 분야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기술 수준별로 한국의 (수출)산업을 분류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기술 수준별 산업분류

기술 수준	산업명
고위 기술 수준	의약,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 통신기기, 가전, 정밀기기, 전지, 항공
중고위 기술 수준	석유화학, 정밀화학, 기타전자부품, 전기기기, 일반목적기계, 특수목적기계, 자동차, 철도, 기타 수송장비
중저위 기술 수준	석유정제, 고무, 플라스틱, 유리, 세라믹, 시멘트, 기타 비금속광물, 철강, 비철금속, 주조, 조립금속, 조선
저위 기술 수준	음식료, 담배, 섬유, 의류, 가죽·신발, 목재, 제지, 인쇄, 가구, 기타제조업

출처 : 산업통계분석시스템

금번 연구는 한국 수출품목의 시기별 구성 변화를 산업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분석하기 위해, 분석 기간(2000~2019년) 동안 수출실적을 보유한 모든 화물을 HS code 6단위와 ISTANS의 산업기술 수준별 제조업 품목을 연계하여 자료를 구축하였다. 분석 기간 동안 WCO의 HS(K) code는 총 4차례의 큰 개정이 있었는데,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분석 시점별로 HS 96(2000년), HSK 04(2005년), HSK 07(2010년), HSK 12(2015년), HSK 17(2019년) 등을 각각 활용하여 자료를 구축하고 분석에 활용하였다.

Ⅲ. 기술 수준별 국내 수출품목 특성 변화

1. 기술 수준별 수출액 변화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글로벌 상품교역 시장의 전체 규모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수출 규모도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산업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연도별 수출품목 수출액을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기술 수준별 수출액 변화 (단위 : 백만 달러, %)

기술 수준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9년	CAGR
고위	60,801	99,443	145,143	158,444	172,926	5.66
중고위	46,262	95,436	156,913	201,337	208,157	8.24
중저위	36,014	65,054	136,226	136,397	131,157	7.04
저위	27,755	23,153	25,847	28,854	28,172	0.08
합계	170,832	283,087	464,129	525,033	540,411	6.25

출처 : 산업통계분석시스템,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 재가공

2000년 약 1,700억 달러 규모였던 한국의 전체 수출액은 2010년 이후부터는 거의 5,000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를 수출산업의 기술 수준에 따라 살펴보면 중고위 기술 산업군의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저위 기술 산업군의 수출액 증가 속도가 고위 기술 산업군보다 오히려 빠르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반면, 과거 한국의 산업 성장을 이끌었던 노동집약적 산업군인 저위 기술 산업 수출액 규모는 2000년대 이후 거의 정체되어 있다.

2. 기술 수준별 수출품목 수 변화

산업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연도별 국내 수출품목의 수출품목 수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수출액 성장 속도가 빨랐던 중고위 기술 산업군에서 수출품목 수 증가도 많이 이루어졌다. 수출액 측면에서 성장이 정체된 저위 기술 산업군은 품목 수 측면에서는 전체 수출품목 수 연평균 증가율(0.41%) 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해당 산업군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산업 분야로 다양한 품목의 신규 공급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표 3> 기술 수준별 수출품목 수 변화

(단위 : 개, %)

기술 수준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9년	CAGR
고위	454	468	449	454	466	0.14
중고위	1,335	1,369	1,336	1,367	1,407	0.28
중저위	867	894	909	901	904	0.22
저위	1,553	1,614	1,588	1,698	1,768	0.68
합계	4,209	4,345	4,282	4,420	4,545	0.41

출처 : 산업통계분석시스템,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 재가공

Ⅳ. 기술 수준별 수출화물의 운송수단 활용 특성

1. 고위 기술 산업군

한국 수출품목 구성의 구조적 변화 추세를 연관 수출산업의 기술 수준과 연계하여 살펴본 결과, 과거 한국 수출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저위 기술 산업군의 수출규모는 정체된 반면, 다른 기술 산업군의 수출규모는 모두 크게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중고위 기술 산업군이 이러한 성장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금번 연구에서는 수출화물 기술 수준 유형별 운송수단 활용 특성 변화를 분석하였다.¹⁾ 고위 기술 산업군의 운송수단별 수출금액 및 수출품목 수의 변화는 <표 4>와 같다.

고위 기술 산업군에서 지난 20년 동안 항공기만을 이용한 수출품목의 수출액은 분석 시기마다 적지 않은 편차가 존재하지만, 최근들어 엄청난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편차의 존재는 항공 운송만을 이용하는 품목 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어 예외적인 수출실적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고위 기술 산업군에서 해상 운송만을 이용하여 수출된 품목의 수출액 규모나 수출품목 수는 모두 2000년 대비 2019년에 급감하였는데, 이는 화물가치 수준이 높은 고위기술 산업군에서는 해상 운송만을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사

1) ‘항공’이란 항공 운송만을 활용하여 운송된 수출화물을 뜻하며, ‘해운’이란 해상 운송만을 활용한 화물을, 그리고 ‘항공+해운’은 항공과 해상 운송을 모두 활용한 수출화물을 의미한다.

라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면 ‘항공+해운’의 경우 수출액 규모나 수출품목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는데 이는 고위 기술 산업군 품목의 수출에서 국제 화물 운송수단 간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 4> 고위 기술 산업군 수출금액 및 수출품목 수 변화

(단위 : 백만 달러, 개, %)

연도	항공		해운		항공+해운	
	수출액	수출품목 수	수출액	수출품목 수	수출액	수출품목 수
2000년	512	45	41	26	60,248	383
2005년	232	41	29	29	99,183	398
2010년	54	29	20	13	145,069	407
2015년	430	45	0.31	8	158,014	401
2019년	1,780	48	0.03	2	171,145	416
CAGR	6.78	0.34	-32.19	-12.63	5.65	0.44

출처 : 산업통계분석시스템,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 재가공

2. 중고위 기술 산업군

다음 <표 5>는 우리나라 중고위 기술 산업군의 수출액 및 수출품목 수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표 5> 중고위 기술 산업군 수출금액 및 수출품목 수 변화

(단위 : 백만 달러, 개, %)

연도	항공		해운		항공+해운	
	수출액	수출품목 수	수출액	수출품목 수	수출액	수출품목 수
2000년	35	27	3,779	360	42,448	948
2005년	1.6	27	8,264	292	87,171	1,050
2010년	2.9	27	9,998	230	146,911	1,079
2015년	11	38	8,553	123	192,773	1,206
2019년	3.4	45	5,269	109	202,884	1,253
CAGR	-11.53	2.73	1.76	-6.09	8.58	1.48

출처 : 산업통계분석시스템,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 재가공

중고위 기술 산업군에서도 항공기만 이용하여 수출된 품목의 수출규모는 분석 시기마다 적지 않은 편차가 존재하지만, 품목 수는 과거에 비해 최근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해운 전용 수출품목의 수출액은 2010년까지 증가하다 감소한 반면, 품목 수는 200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글로벌 공급사슬 특성 변화로 과거 해운 전용 수출품목에서도 예외적으로 신속한 화물운송 수단(항공)을 선택한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이는 중고위 기술 산업군 수출에서도 국제화물 운송수단 간 경쟁이 수출액 측면이나 수출품목 수 측면에서 모두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중저위 기술 산업군

다음 <표 6>은 우리나라 중저위 기술 산업군의 수출액 및 수출품목 수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표 6> 중저위 기술 산업군 수출금액 및 수출품목 수 변화

(단위 : 백만 달러, 개, %)

연도	항공		해운		항공+해운	
	수출액	수출품목 수	수출액	수출품목 수	수출액	수출품목 수
2000년	23	17	10,200	192	25,792	658
2005년	2.0	17	23,986	170	41,067	707
2010년	2.4	14	31,030	131	105,194	764
2015년	276	21	4,847	64	131,274	816
2019년	697	25	15,394	56	115,067	823
CAGR	19.68	2.05	2.19	-6.28	8.19	1.18

출처 : 산업통계분석시스템,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 재가공

중저위 기술 산업군에서는 항공 운송만을 이용한 수출품목의 수출액 증감 변화가 큰 편이었는데, 이는 중저위 기술 산업군 중 ‘비철금속’에 해당하는 품목 수출액의 시기별 편차가 컸기 때문이다. 이에 상세한 분석을 위해서는 향후 ‘비철금속’ 수출산업과 관련된 특수 교역 사례에 대한 추가 조사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중저위 기술 산업군 수출품목에는 ‘조선’, ‘석유화학’

등과 같은 해상 운송 의존도가 높은 수출산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특정 산업의 수출경기에 따라 해운 전용 품목의 수출액은 연도별로 큰 편차를 보인다. 중저위 기술 산업군 역시 ‘항공+해운’ 품목의 수출액과 품목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현상도 국제물류시장에서 수단간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저위 기술 산업군

마지막으로 다음 <표 7>은 우리나라 중고위 기술 산업군의 수출액 및 수출품목 수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표 7> 저위 기술 산업군 수출금액 및 수출품목 수 변화

(단위 : 백만 달러, 개, %)

연도	항공		해운		항공+해운	
	수출액	수출품목 수	수출액	수출품목 수	수출액	수출품목 수
2000년	2.9	40	408	291	27,343	1,222
2005년	0.8	26	765	301	22,388	1,287
2010년	34	37	388	266	25,425	1,285
2015년	13	54	572	234	28,269	1,410
2019년	17	61	572	213	27,584	1,494
CAGR	9.64	2.25	1.79	-1.63	0.05	1.06

출처 : 산업통계분석시스템,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 재가공

화물가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위 기술 산업군의 수출품목은 항공 운임을 감당하기 어려운 특성으로 인해 항공 전용 수출액 규모가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저위 기술 산업군에서도 운송수단 간 경쟁이 발생(항공+해운)하는 수출품목 수는 증가하지만 수출액은 시기별로 거의 일정한데, 이는 국내 수출산업이 고도화되어 저위 기술 산업군의 전체 수출실적이 정체되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한가지 특이한 점은 2010년 이후 저위 기술 산업군에서 항공 전용 수출품목 수와 수출액이 많이 늘었는데, 이는 ‘음식료’ 산업과 관련된 것으로 최근 고부가가치 농수산물 수출 확대 노력과 함께 K-POP·드라마·영

화 등 한류 확산에 따른 한국 식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진 영향으로 보인다.

V. 결론 및 시사점

우리나라 수출산업 구조 변화는 수출화물 품목 구성은 물론 국제화물 운송 수단의 수송 분담률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20년 동안 한국 수출품목 구성의 구조적인 변화 추세를 연관 수출산업의 기술 수준과 연계하여 살펴보고 국제화물 운송수단 선택 결과 및 변화 특성을 분석하였는데, 주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수출산업 구조는 과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저위 기술 산업군의 수출규모는 크게 축소된 반면, 중고위 기술군 수출규모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르고 더욱 자본·기술집약적인 산업 분야로 특화되고 있다. 고위 기술 산업군 수출액과 품목 수 성장 속도는 중고위·중저위 기술 산업보다는 성장 속도가 더딘 편이었는데, 최근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수출성장과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산업의 수출 호조가 지속된다면 고위 기술 산업군의 신규 수출품목 다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내 수출화물의 운송수단 활용 패턴 및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산업기술 분야에서 수단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이러한 현상은 특히 중고위 기술 수출산업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해상(또는 항공) 운송만을 활용하던 수출품목이 오늘날 점차 항공(또는 해상) 운송을 함께 이용하는 패턴으로 변화하였다는 의미로 글로벌 공급사슬 구조 변화에 따른 수단선택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금번 연구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품목의 거래 실적과 운송수단 활용 여부를 거시적인 맥락에서 분석했기 때문에 특정 산업군 차원에서의 운송수단 경쟁 수준이나 관련 의사결정에 미치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고려할 수 없었다는 제약이 존재하나, 국제화물 운송수단의 활용 특성을 수출산업의 기술 수준과 연계하여 처음으로 분석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고현정 (2005), 해상화물과 항공화물의 특성 및 상호전환 가능성에 대한 고찰, 월간 해양수산 통권, 제253호
- 김상열·박호·장현미 (2015), 국제교역환경변화에 따른 항공화물 교역 패턴 변화 분석,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489-500.
- 방기태·장홍훈 (2011), 수출기업의 운송수단 선택요인에 관한 실증연구-제조업과 유통업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해운물류연구, 제27권 제2호(통권 69호)
- 서선애·오가영 (2012), 산업구조와 수출입 상품 특성이 항만물동량에 미치는 영향, 한국물류학회지, 22권 3호, 119-141.
- 신민정 (2019) 수출품목 구성 변화가 항공운송 이용 특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경대 석사학위 논문
- 이정윤·이은지 (2016), 수출화물의 중량 대비 가치에 따른 운송수단 선택 패턴 연구, 물류학회지, 제26권 제1호, 39-49
- 조병도, 정준호 (2011),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한국경제의 산업구조변화와 성장요인 분석(1995~2008년), 한국산업경제학회, 24(6), 3433-3456.
- F Jiang, P Johnson, C Calzada(1999), Freight demand characteristics and mode choice: an analysis of the results of modeling with disaggregate revealed preference data, JOURNAL OF TRANSPORTATION AND STATISTICS
- Mikko Punakivi and Ville Hinkka(2006), Selection Criteria of Transportation Mode : A Case Study in Four Finnish Industry Sector, Transport Reviews, Vol 26, No. 2, 207-219.
- Yu-Hern Chang, Yu-Wei Chang(2009), Air cargo expansion and economic growth: Finding the empirical link, Journal of Air Transport Management, Volume 15, Issue 5, 264-265.

코로나-19가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 한 · 중 항공회사를 중심으로

저자 : 왕주에·김진황·최태영(부경대)

발표자 : 왕주에(부경대)

코로나-19가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 한·중 항공회사를 중심으로

왕주에* · 김진황** · 최태영***

A Study on the Effects of COVID-19 Pandemic on Tourism
Industry : Focusing on Korean and Chinese Airline Companies

Jue Wang* · Jin-Hwang Kim** · Tae-Yeong Choi***

〈목 차〉

Abstract

I. 서론

II. 자료와 연구모형

III. 분석결과

IV. 결론

참고문헌

* (제1연구자) 부경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석사과정 학생.

** (공동저자) 부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교신저자) 부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Email : tychoi@pknu.ac.kr.

Abstract

Since the outbreak of COVID-19 pandemic in 2019, many countries have banned cross-border movements, suspended operations, or restricted travel to contain the spread of deadly infectious disease. As a result, these lockdown policies have slowed down many industries across the globe. Among them, the airline industry has been greatly affected. In this paper, we aim to examine the effects of COVID-19 pandemic on tourism industry focusing on Korean and Chinese airline companies. For the empirical analysis, we employ the GARCH (Generalized Autoregressive Conditional Heteroskedasticity) series model (Bollerslve, 1986). We collect data for the daily stock prices of five most representative airlines in Korea and China, USD/KRW exchange rate, USD/CNY exchange rate, Western Texas oil price, KOSPI, SSEC stock index, and DJIA (Dow Jones Industrial Average). The data span covers January 1, 2016 through December 31, 2020. We find that the exchange rate has a negative impact on the stock price volatility of both Korean and Chinese airline companies. On the other hand, the oil price shows a positive impact on the stock price volatility of both KAL and Chinese airline companies.

Keywords : airlines, DJIA, stock prices, volatility, COVID-19 pandemic, GARCH

I. 서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국내·외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글로벌 항공회사들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이 한국과 중국의 항공회사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계량경제학적 모형을 이용해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Bollerslve (1986)의 GARCH 모형 (Generalized Autoregressive Conditional Heteroskedasticity)에 근거해서 한중 주가지수, 대미달러환율, 국제유가 다우존스지수(DJIA) 변동이 항공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II. 자료와 연구모형

1. 자료

실증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는 항공사 주가이며, 한·중 주식시장의 주가지수, 대미 달러환율, 국제유가, DJIA 등은 독립변수이다. 이 변수들에 관한 일별 자료를 인베스팅닷컴(investing.com)에서 수집하였다. 자료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다. 결측치를 제외한 최종 관측치 수는 1,191개이다.

2. 연구모형

본 논문에서는 김도완 (2020)에 근거해서, 다음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Vol_{i,t}^{AIR} = \beta_0 + Vol_t^{EXG}\beta_1 + Vol_t^{OIL}\beta_2 + Vol_t^{SPI}\beta_3 + Vol_t^{DJIA}\beta_4 + \epsilon_{i,t} \quad (1)$$

여기서, $Vol_{i,t}^{AIR}$ 는 종속변수로서 항공사의 주가변동성을 나타내고, 나머지 변

수들은 독립변수들이다. Vol_t^{EXG} 는 해당 국가의 대미환율 변동성을 각각 나타낸다. Vol_t^{OIL} 는 유가변동성을, Vol_t^{SPI} 는 항공사가 상장된 주식시장의 주가지수 변동성을, 그리고 Vol_t^{DJI} 는 미국 DJIA변동성을 각각 의미한다. 아래 첨자 i 는 항공사를, 아래 첨자 t 는 시점을 각각 나타낸다. 또 위첨자 AIR 은 항공사(Airline)를, EXG 는 환율(Exchange rate)을, OIL 는 유가(Oil price)를, DJI 는 다우지수(Dow Jones Industrial Average)를 각각 의미한다.

Ⅲ. 분석결과

1. 기초통계량 (한국 항공회사)

〈표 1〉 한국 항공회사의 기초통계량 (N=1,191)

Variable	Airline	Mean	SD	Median	Min	Max	Skew	Kurt.	J-B
$Vol_{i,t}^{AIR}$	KAL	-0.021	0.082	-0.002	-0.402	0.560	-2.621	14.0	7298***
	ASA	0.127	0.487	0.000	-0.667	2.895	3.571	14.0	8531***
Vol_t^{SPI}		0.000	0.011	0.001	-0.083	0.086	-0.167	14.7	6760***
Vol_t^{DJI}		0.001	0.013	0.001	-0.129	0.114	-0.699	25.9	26260***
Vol_t^{EXG}		-0.000	0.005	-0.000	-0.030	0.027	-0.035	5.2	240***
Vol_t^{OIL}		-0.003	0.101	0.002	-3.059	0.377	-24.632	716.2	25360***

주 : (1) ***는 1%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2) KAL=Korean Airline, ASA=Asiana Airline

W=KRW/USD환율, WTI=서부텍사스유, KOSPI=한국종합주가지수, DJIA=다우지수.

2. 실증분석 결과 (한국 항공회사)

〈표 2〉 한국 항공회사 전체기간 실증분석(2016. 1. 4.~2020. 12. 23)

(a) GARCH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Coef.	z-value	Coef.	z-value
c	-0.002	-3.167***	-0.001	-1.987**
Vol^{EXG}	-0.050	-0.413	-0.178	-1.809*
Vol^{OIL}	0.009	0.447	-0.012	-0.632
Vol^{SPI}	1.062	14.691***	0.796	13.405***
Vol^{DJI}	-0.017	-0.247	0.028	0.478

(b) TARCH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Coef.	z-value	Coef.	z-value
c	-0.002	-2.889***	-0.001	-2.145**
Vol^{EXG}	-0.007	-0.056	-0.164	-1.738*
Vol^{OIL}	0.002	0.087	-0.003	-0.124
Vol^{SPI}	1.071	16.623***	0.798	13.076***
Vol^{DJI}	0.034	0.564	0.027	0.462

(c) EGARCH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Coef.	z-value	Coef.	z-value
c	-0.002	-2.853***	-0.001	-2.177**
Vol^{EXG}	-0.008	-0.059	-0.164	-1.756*
Vol^{OIL}	0.003	0.193	-0.012	-0.598
Vol^{SPI}	1.081	16.705***	0.783	12.861***
Vol^{DJI}	0.039	0.642	0.021	0.376

주 :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위 <표 2>에서, 대한항공의 경우 GARCH방법론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결과에서 환율변동성은 부(-)의 계수값을 가지고 유가변동성, 주가지수변동성과 다우존스지수변동성은 정(+)의 계수값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주가지수변동성은 1% 수준에서 유의하다. 이는 환율변동성과 항공회사의 주가변동성 간 역관계는 환율변동성이 항공회사 주가변동성에 부(-)의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유가변동성, 주가지수변동성과 DJIA변동성이 증가하면 항공회사의 주가변동성이 증가해 유가변동성, 주가지수변동성과 다우존스지수변동성은 주가변동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IV. 결론과 한계점

1. 결론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환율변동성, 유가변동성, 주가지수변동성과 다우존스지수변동성이 한·중 양국의 항공회사 주가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비교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Bollerslve(1986)의 GARCH 모형을 사용하였다.

전체기간 동안 한국 항공사의 환율변동성은 항공회사 주가변동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주가지수변동성과 DJIA변동성은 항공회사 주가변동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환율변동성이 증가하면 항공회사의 주가변동성이 감소하였지만, 주가지수변동성과 다우지수변동성의 증가는 항공회사 주가변동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변동성은 대한항공의 주가변동성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아시아나항공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2. 한계점

본 논문에서는 연구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한·중 양국의 가장 대표적인 항공사들만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즉, 한국 2개사, 중국 3개사, 전체 5개사이다. 연구대상 항공사 숫자가 5개사에 불과하므로 한·중 전체 항공시장을 포함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분석결과의 설명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도완(2020), “거시변수의 변동성에 따른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주가변동성 : 항공회사 주가변동성을 중심으로”, *한국항공경영학회지*, 18(1), pp. 109-124.
- 윤문길·장윤혜(2020), “COVID-19 이후 우리나라 항공시장 회복과정 연구”, *한국항공경영학회지*, 18(4), pp. 89-106.
- 조용복·김도완(2020), “전염병 전후의 항공회사 주가변동성 : A(H1N1), MERS-CoV, COVID-19를 전후로”, *한국항공경영학회지*, 18(5), pp. 33-53.
- 황동해(2018), “항공사 주가의 변동 요인에 관한 연구 : 거시경제변수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ollerslve, T.(1986), “Generalized Autoregressive Conditional Heteroskedasticity”, *Journal of Econometrics*, 31(3), pp. 307-327.
- Glosten, L. R., R. Jagannathan, and D. E. Runkle(1993), “On the Relation between the Expected Value and the Volatility of the Nominal Excess Return on Stocks”, *Journal of Finance*, 48(5), pp. 1779-1801.
- Nelson, D.(1991), “Conditional Heteroskedasticity in Asset Returns: A New Approach”, *Econometrica*, 59(2), pp. 347-370.
- 杜方叶·王姣娥·王涵(2020), “新冠疫情對中國國際航空網絡連通性的影響及空間差異”, *熱帶地理*, 40(3), pp. 386-395.
- 劉林·孟焯·楊坤(2015), “結構變化、人民幣匯率與我國股票價格-理論解釋與實証研究”, *國際金融研究*, 5, pp. 3-14.

중국 관광회사의 주가변동성에 관한 연구 : DCC-BEKK 모형

저자 : 왕야리·김진황·최태영(부경대)

발표자 : 왕야리(부경대)

중국 관광회사의 주가변동성에 관한 연구 : DCC-BEKK 모형의 적용

왕야리* · 김진황** · 최태영***

A Study on the Stock Price Volatility of Tourism Companies in
China : An Application of DCC-BEKK Model

Yali Wang* · Jin-Hwang Kim** · Tae-Yeong Choi***

〈목 차〉

Abstract

I. 서론

II. 자료와 연구모형

III. 분석결과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In this paper, we aim to conduct an empirical study on the stock price volatility of tourism companies in China using the DCC-BEKK model. We collect data for the daily stock price of tourism companies listed in China's Shanghai Stock Exchange. The data span covers January 1, 2016 through December 31, 2020.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re exist volatility spillover effects between exchange rate and stock prices of tourism companies in China.

Keywords : tourism industry, Shanghai Stock Exchange, stock price volatility,
DCC-BEKK model

* (제1연구자) 부경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석사과정 학생.

** (공동저자) 부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교신저자) 부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Email : tychoi@pknu.ac.kr.

I. 서론

본 논문에서는 중국 관광회사의 주가와 환율 간의 시간가변적 변동성에 대한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방법론으로 Engle and Kroner(1995)의 DCC-BEKK 모형을 이용하였다.

<표 1> 중국 관광산업의 발전 추이(2011-2019)

연도	국내여행 연인원	국내여행 수익	인바운드 연인원	인바운드 수익	아웃바운드 연인원	아웃바운드 수익
2011	26.41	19,305	13542	484.64	7025	2.95
2012	29.57	22,706	13241	500.28	8318	2.59
2013	32.62	26,276	12908	516.64	9819	2.95
2014	36.11	30,312	12850	1053.80	10728	3.73
2015	39.90	34,195	13382	1136.50	11689	4.13
2016	44.35	39,390	13844	1200.00	12203	4.69
2017	50.01	45,661	13948	1234.17	13051	5.40
2018	55.39	51,278	14120	1271.03	14972	5.97
2019	60.06	57,251	14531	1313.00	15463	6.63
단위	억 명	억 위안	만 명	억 달러	만 명	천 억위안

출처 : 중화인민공화국문화와관광부(中華人民共和國文化和旅遊部).

II. 자료와 연구모형

1. 자료

실증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는 중국 관광회사의 주가이며, 독립변수는 대미 달러환율이다. 상하이증권거래소에서 상장된 관광회사 중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10개 회사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변수들에 관한 일별 자료를 인베스팅닷컴(www.investing.com)에서 수집하였다. 자료기간은 중국 위안화 환율 제도 개혁이후부터 현재까지, 즉 2015년 8월 11일~2020년 12월 31일이

다. 결측치를 제외한 최종 관측치 수는 1,192개이다.

<표 2> 변수 설명

구분	변수 기호	회사명		상장일 (개시일)
		한글	영어	
회사 1	QJCT	취장 문화 관광	QuJiang Cultural Tourism	1996. 5. 16
회사 2	JJHC	진장 국제 호텔	Jin Jiang Hotel Company	1996. 1. 11
회사 3	HSTG	황산 관광	HuangShan Tourism Group	1997. 5. 6
회사 4	CYTS	중국청소년 관광	China Youth Travel Service	1997. 12. 3
회사 5	BTG	BTG 호텔	BTG Hotel	2000. 6. 1
회사 6	DSTH	대련수나시아관광	Dalian Sunasia Tourism Holding	2002. 7. 11
회사 7	JHC	진링 호텔	Jinling Hotel Corporation	2007. 4. 6
회사 8	CTS	중국 국제 관광	China International Travel	2009. 11. 27
회사 9	CBM	장백산관광	Changbai Mountain Tourism	2014. 8. 22
회사 10	JHTD	구화산관광	AnhuiJiuhuashan Tourism Development	2015. 3. 26
상하이 종합지수	SSEC	상하이 증권거래소	Shanghai Stock Exchange Tourism	1990. 11. 26
환율	EX	달러/원	USD/CNY	1949. 10. 1

2. 연구모형

본 논문에서는 중국 관광회사의 주가와 환율 간의 시간가변적 변동성을 분석하기 위해 Engle and Kroner(1995)의 DCC-BEKK 모형을 사용하였다.

$$H_t = D_t R_t D_t \quad (1)$$

$$D_t = \text{diag}(\sqrt{h_{i,t}}, \sqrt{h_{j,t}}) \quad (2)$$

$$Q_t = (1-a-b)\bar{Q} + az_{t-1}z_{t-1} + bQ_{t-1} \quad (3)$$

$$R_t = \text{diag}(q_{i,t}^{1/2}, q_{j,t}^{1/2}) Q_t \text{diag}(q_{i,t}^{1/2}, q_{j,t}^{1/2}) \quad (4)$$

여기서,

H_t : 조건부 공분산 행렬

D_t : 조건부 표준편차 대각행렬

R_t : 동태적 조건부 상관관계 행렬

Q_t : 비조건부 공분산행렬

a와 b : 비스칼라 모수

a+b<1 : 모형의 안정성을 위한 조건

실증분석에서 사용된 주가수익률 혹은 환율변동율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였다.

$$R_t = \ln\left(\frac{P_t}{P_{t-1}}\right) \quad (5)$$

여기서,

R_t : 환율변화율 혹은 관광회사 주가수익률

P_t : t시점 환율 혹은 관광회사 주가

P_{t-1} : t-1시점 환율 혹은 관광회사 주가

Ⅲ. 분석결과

1. 단위근 검정 결과

시계열 자료의 안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단위근 검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단위근 검증 결과

구분	변수 기호	ADF	PP
회사 1	QJCT	-33.390***	-33.841***
회사 2	JJHC	-35.281***	-35.320***
회사 3	HSTG	-36.801***	-36.795***
회사 4	CYTS	-35.478***	-35.513***
회사 5	BTG	-33.823***	-33.819***
회사 6	DSTH	-20.480***	-31.074***
회사 7	JHC	-35.313***	-35.481***
회사 8	CTS	-29.811***	-45.358***
회사 9	CBM	-34.209***	-34.423***
회사 10	JHTD	-34.468***	-34.475***
상하이 종합지수	SSEC	-35.919***	-35.935***
대미환율	EX	-35.370***	-35.387***

주 : 1. 변수기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표 2> 참조..

2. ***p<0.01, **p<0.05, *p<0.1.

ADF 검증결과와 PP 검증결과는 모두 1% 수준에서 유의하였고, 이는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자료는 안정적인 시계열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2. DCC-BEKK 모형 실증분석 결과

<표 4> BEKK 모형 실증분석 결과

계수	유의 여부	
	관광회사	상하이 종합지수 (SSEC)
A(1,1)	유의함	유의함
A(1,2)	유의하지 않음	유의하지 않음
A(2,1)	QJCT, BTG제외 유의함	유의함
A(2,2)	유의함	유의함
B(1,1)	유의함	유의함
B(1,2)	HSTG, CYTS, BTG 제외 유의하지 않음	유의하지 않음
B(2,1)	QJCT, BTG, DSTH 제외 유의함	유의함
B(2,2)	유의함	유의함

Ⅳ. 결론과 한계점

1. 결론

본 논문에서는 중국 관광회사의 주가와 환율 간의 시간가변적 변동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Engle and Kroner(1995)의 DCC-BEKK 모형을 이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중국 관광회사의 주가와 환율 간에는 평균적으로 음(-)의 시간가변적 변동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상관관계의 정도도 시간가변적 변동성을 보여주었다.

2. 한계점

본 논문은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관광회사 중에서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만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각 회사의 비거래일을 공통적으로 모두 삭제하였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표본기업수를 증가시키고, 비거래일을 포함할 수 있는 연구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고위 (2017). 환율의 외생효과를 고려한 주가의 비대칭적 변동성에 관한 연구 : 금융위기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경수 (2011). BEKK와 DCC 모형을 이용한 주가, 금리 및 환율의 변동성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24(3), pp. 1443-1463.
- 원두환·정수관 (2019). 환율과 유가 변동이 관광수요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 DCC-MGARCH 모형 적용, *Journal of Korea Data Analysis Society*, 21(4), pp. 1905-1916.
- 최기홍·김동윤·김희진 (2019). 한국 관광기업 주가와 환율 간의 변동성 전이효과와 시간가변적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 국내여행사를 대상으로, *관광레저연구*, 31(11), pp. 79-93.
- Dornbusch, R. and S. Fischer. (1980). Exchange rates and the current account, *American Economic Review*, 70(5), pp. 960-971.
- Engle, R. F. (2002). Dynamic conditional correlation: A simple class of multivariate generalized autoregressive conditional heteroskedasticity models, *Journal of Business and Economic Statistics*, 20, pp. 339-350.
- Engle, R. F. and K. F. Kroner (1995). Multivariate simultaneous generalized ARCH, *Econometric Theory*, 11, pp. 122-150.

- Korhan, K., A. Gokmenoglu and A. Hadood (2019). Volatility spillovers and time varying correlation for Chinese tourism firms, *Asia Pacific Journal of Tourism Research*, 24(6), pp. 584-596.
- 程 龍 (2020). 人民幣匯率變動對中國金融行業股價的影響研究－基于“811匯改”前后上証金融股指的實証分析, 山東大學.
- 謝婉鋒 (2020). 人民幣匯率變動對中國入境旅游市場的影響, 吉林大學.